

일제시대 근대 ‘국민’ 개념 형성과정 연구*

한승연**

이 논문에서는 구한말 서구에서 도입된 근대 ‘국민’ 개념이 일제시대에 어떤 용어들로 불렸는지 개념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전통적으로 ‘국민’과 ‘국인’ 또는 ‘君’, ‘臣’, ‘民’으로 구분되어 있던 국민 개념은 구한말에 서구의 근대 국민 개념이 도입된 이후 ‘국민’, ‘인민’, ‘신민’ 등으로 수렴되었다. 일제시대에 국민을 지칭하는 공식 용어는 ‘신민’이었으나, 정치나 행정 현실에서는 ‘국민’, ‘민중’, ‘관민’, ‘동포’, ‘일반’, ‘인민’, ‘민’ 등 근대적인 용어와 전통적인 용어들이 혼재되어 사용되었다. 같은 ‘국민’이라는 기표 안에서도 시기별로 통치의 목적에 따라 그 기의가 상당히 다른 용어들을 적절히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곧 일제 강점 초기에는 민족감정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대체로 중립적인 ‘인민’과 ‘국민’으로 부르다가, 3·1운동이라는 민족운동을 당하자 한국 민중을 달래고 관민의 일치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민중’과 ‘관민’을 강조하였다. 다시 전쟁의 확대로 고도 국방국가체제가 형성되자 소위 ‘천황폐하’ 아래 1억 국민의 절대복종을 끌어내기 위해 ‘국민’과 ‘관민’, ‘황국신민’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그 용어가 무엇이든 일제시대 국민 개념은 군주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만을 의미했기 때문에, 모두가 평등한 일체적인 ‘국민’ 개념은 형성될 수 없었다.

주제어: 국민, 민족, 신민, 관민, 개념사

I. 서론

하나의 인공적 인격체로서 거대한 ‘괴물’이 근대 국가(state)라면, 그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의 총체를 가리키는 집합개념이 국민(nation)이다(佐竹寬, 1994:

* 이 논문은 2010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신진교수 지원(인문사회 분야)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0-332-B00543).

** 고려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로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행정사(조선총독부행정), 인사행정 등이다(hsy0091@chungbuk.ac.kr).

326). 이 ‘국민’은 영원한 범주가 아니라, 유럽사에서 길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생겨났으며(Hroch, 1996: 61), 근대 국가의 출현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국민’은 근대적 국가통치의 결과로서, 근대국가의 통치의 대상으로서, 문자 그대로 ‘국가의 국민’으로서 탄생하였다(佐藤成基, 1999: 45). 따라서 국민도 국가처럼 순전한 인공적 창조물이라 할 수 있다.

국민(Volk)과 민족(Nation),¹⁾ 대중(Masse)의 개념사는 서구 역사는 물론, 전세계 사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개념들은 정치적 행동통일의 자기조직과 자각을 의미하거나, 때로는 거기서 제외된 다른 행동통일과 이질적 집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자기자신을 지각한다는 것(自覺)과 타인을 지각한다는 것(他覺)은 흔히 동일한 개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구성된다. ‘민족’과 ‘대중’은 외래어로서 국제적으로 자연스럽게 통용되는 개념들인 반면, ‘국민’이라는 개념은 대부분 각기 민족어(Nationalsprache)와 상응하는 것들 안에서만 등장한다”(Koselleck, 1992: 142). 따라서 ‘종족의 발생’에서 유래하는 ‘국민’과 ‘민족’은 대체로 고유한 행동통일의 발생과 변화, 변모과정을 의미한다(Koselleck, 1992: 142).

국민은 공통의 또는 근사한 혈통의 결합과 공동의 주거지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면서도, 거기에 공통의 언어, 공통의 정신생활, 공동의 국가적 결합, 약간의 동질적 국가연합 등으로 그 범위가 확대된다. 더욱이 국민은 혈통과 영토에 의해 결합된 정적 집단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가 끝없이 더해지면서 운동하고 변화하는 것으로써, 그 의미는 역사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다(樺島博志, 2005: 897). 애초에 고립된 생활을 하던 고독한 개인에서 종족으로, 통치의 대상인 신민으로, 정치 참여의 주체인 시민으로, 거기에 근대 이후 인종, 인민, 민족 등의 개념과 결합하면서 근대 ‘국민’ 개념은 발전하였다. 따라서 이 ‘국민’ 개념은 근대 ‘국가’ 개념과 함께 근대국가 형성의 기초를 이루는 개념으로서,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다시 말해 우리가 근대국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민’ 개념 자체의 생성과 변화를 비롯하여, 국가와 국민, 주권의 관계, 인종·신민·인민·민족·민중 등의 개념과 국민의 관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1) 현대 독일 정치학사전에서 Nation은 종족과 언어, 문화적 소속감이 동일한 집단으로(Schmidt, 2010: 526), Volk는 헌법적인 의미에서 국가구성원의 총체성 또는 일상적인 의미에서 국가국민으로(Schmidt, 2010: 866) 정의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국민은 Volk로, 민족은 Nation으로 표기한다. 이에 해당하는 영어는 둘 다 nation이다.

그동안 국내외 정치학계와 역사학계에서도 국민 개념이 한반도에 전파된 경위를 논의한 연구는 상당수 있다. 이 방면의 선구를 이루는 月脚達彦(1995/1999)의 연구를 비롯하여, 구한말의 '국민' 개념 형성과정을 밝힌 연구로는 장인성(2000), 백동현(2001), 李太鎭(2001), 김동택(2002), 강동국(2005), 김윤희(2009), 박명규(2009) 등이 있고, 광복 이후의 이 개념의 형성에 대한 연구로는 정태현(2002), 신진욱(2008), 김성보(2009) 등이 있다. 메이지(明治)유신 전후 일본의 '국민' 개념 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로는, 그 전기적(前期的) 형성과정을 연구한 丸山眞男(1952, 김석근 역, 1995: 463~516)을 비롯하여, 독일의 국법학자 J. K. Bluntschli의 국민 개념이 일본에 전파되는 과정을 분석한 山田央子(1991/1992) 등의 걸출한 연구가 있다. 국내의 이들 연구는 대부분 구한말 이래 국민 개념의 한반도 전파 경위와 광복 이후의 그 개념적 분화과정을 연구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들 연구에서는 일제시대에 국민 개념으로 어떤 개념들이 사용되었고, 또 이러한 개념들이 어떻게 인식되고, 이해되었나 하는 부분이 생략된 채 어둠상자(black box)로 남아 있다.

그런데 구한말 서구에서 전래된 많은 근대적인 개념들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권을 상실함에 따라, 이들 개념들은 대체로 일제시대를 통해 어느 정도 변형된 다음 광복 이후로 전달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한다면, 일제시대 국민 개념의 형성과정을 분석하는 것은 현재의 국가 개념과 함께 국민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한 바탕이 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구한말 서구에서 전래된 근대 '국민' 개념이, 일제시대 각 시기별로 어떻게 변화하며 형성되었는지를 개념사 연구방법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 또한 이 연구는 필자의 '국가' 연구(2010: 1~27)에 이은 계속연구이기도 하다.

Ⅱ. 동서양의 국민 개념

1. 국민 개념 연구방법으로서 개념사

인간이 자신의 삶과 환경을 표현하려 할 경우 언어가 유일한 도구는 아닐지 몰라도 가장 중요한 도구임은 분명하다. 이때 우리는 언어와 실재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이 구별은 프랑스 언어학자 Ferdinand Saussure가 제시한 ‘기표(記表, signifiant)’와 ‘기의(記意, signifié)’ 사이의 구별, 곧 단어와 그 단어와 관련되는 세계 안의 존재 사이의 구별에서 잘 드러난다(Hölshcer, 김성호 역, 2009: 11). “개념사를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언어와 실재의 관계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에 관한 수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진다”(Hölshcer, 김성호 역, 2009: 12). “Koselleck에 따르면 개념은 역사적 현실들과 분리하여 사고될 수 없다. 역사적 현실의 변화는 개념의 변화에 영향을 주며, 또한 개념의 변화는 역사적 현실의 변화에 영향을 준다”(고원, 2009: 145). 그래서 개념사 연구의 성패는 한편으로는 적절한 사료의 발굴과 다른 한편으로는 뜻의 위계, 개념과 현실 간의 간극을 적절히 포착하고 해석하는 역사가 개인의 능력에 달려 있다(김학이, 2009: 108).

근대 이후 사용하는 정치적·사회적 개념들의 유형 가운데, ‘국가’ 개념과 마찬가지로 ‘국민’ 개념도 단어형태는 같지만 ‘말안장시대’(1750~1850) 이후 그 개념의 의미가 확연히 달라져서, 의미를 비교할 수 없고 사적(史的)으로만 확인할 수 있는 개념이다(Koselleck, 1995, 한철 역, 2007: 132~133; Richter, 1995: 36~37). 그리고 이와 같은 역사적 기본개념들의 변화과정을 서술하기 위해서는 4가지 기본특징들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첫째, 민주화(Demokratisierung)이다. 이는 ‘새 시대’(neue Zeit) 이래 사회적, 정치적 개념들의 사용범위가 귀족이나 정치 엘리트층을 넘어서 점점 대중으로 넓혀지는 과정을 말한다. 둘째, 시간화(Verzeitlichung)이다. 이는 그때부터 언어 의미들이 분명한 시간 의식을 감싸면서 ‘역사적 목적 개념’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셋째, 이와 더불어 이념화(Ideologisierung)는 많은 개념들이 집합단수로 쓰이면서 점점 보편화와 추상화의 수준으로 상승하는 경향이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구호나 표어로 등장했던 신조어들에서 보듯이 일상의 개념들이 ‘투쟁 개념’으로 발전하는 과정이 정치화(Politisierung)이다(Richter, 1995: 37~38; 박근갑, 2009: 32~33 참조).

이처럼 개념과 역사적 실재 사이의 긴장을 해소하여 그 간극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 개념을 어의론적으로만 조사해서는 안 되고, 정신사적 혹은 실재사적 연구결과들을 고려해야 하며, 무엇보다 의미론적 접근을 명칭론적 접근과 교대로 사용해야 한다. 곧 실상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예를 들어 어떤 실상이 어떻게 개념화되었는지를 알기 위해, 개념사는 (동일한?) 실상에 대한 수많은 명칭들을

조사해야 한다(Koselleck, 1995, 한철 역, 2007: 136~137). 예를 들어 '연방'(Bund)의 단어사만으로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연방의 구조를 개념적으로 충분히 해명할 수 없다. '연대'의 경험이 축적되고 그러한 단어가 생긴 이후에야 이 경험이 '연방'이라는 제도적 표현으로 응축되었다. 이는 다시 제국에 대한 연방의 관계와 연방으로서 제국의 정체, '연대'와 '연방'의 구별, '연방국가'라는 새로운 정체가 역사적 개념으로 등장하는 과정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Koselleck, 1995, 한철 역, 2007: 137~138). 그 밖에 개념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논문의 전편에 해당하는 필자의 '국가'편 논문(2010: 3~4)에서 이미 언급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한다.

이 연구에서는 일제시대 '국민' 개념의 형성과정을 공식적으로 다루면서, 동시에론에 따라 그 상황의 변화를 다루기로 한다. 이를 위해 개념사 연구방법 가운데 어휘통계학(lexicométrie)과 의미론적 차원의 분석방법을 따르기로 한다. 어휘통계학이란 일정 범위의 역사적 문헌자료 안에서 단어들의 용법을 일일이 세어 나감으로써 그 단어를 규정하는 방법이다(Hölshcer, 김성호 역, 2009: 23). 이를 통해 우리는 당시 문헌들에 등장하는 특정한 단어의 다양한 의미와 범위를 확인할 수는 있지만, 과거 사회의 구조를 알 수는 없다(Hölshcer, 김성호 역, 2009: 23).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사에 기초한 개념사의 분석방법을 병행하기로 한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일제시대 조선총독이 당시 한반도 거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발포한 각종 유고(諭告)와 특정 관료들을 대상으로 발포한 각종 훈시(訓示)를 대상으로, '국민' 개념에 해당하는 용어를 확인하고, 각 개념의 출현빈도와 시대별 용어의 차이를 분석하고, 아울러 그러한 차이를 낳게 한 당시의 정치적·사회적 맥락을 분석한다.

일제시대의 시대구분은 역사학계의 관행에 따라 1910년대를 제1기 무단정치기, 3·1운동 이후 1920년대를 거쳐 1931년의 만주사변까지를 제2기 문화정치기, 1931년에서 1945년까지를 제3기 대륙침략병참기지추구기로 나눈다(차기벽, 1985: 19; 강만길, 2001: 17).

2. 국민 개념

1) 서양사의 국민 개념

서양사의 국민 개념 형성과정에 대해서는 Koselleck, Gschnitzer, Werner & Schönemann(1992: 141~431)의 “Volk, Nation, Nationalismus, Masse”²⁾를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국민’ 개념과 유사한 개념으로 서구에서 일찍부터 사용된 것은 ‘시민’ 개념이다. 시민의 가장 단순한 의미는 ‘도시의 주민’이며, 도시를 뜻하는 고대어인 *burg*, *civitas* 등에서 유래한다(신진욱, 2008: 22). 그런데 개념 사용의 구조적 특징들은 그 상하관계와 내외관계, (1800년부터)선후관계의 대립을 통해서 구성된다(Koselleck, 1992: 144). 먼저 상하관계는 항상 통시성을 통해서 교차적으로 고정된다. 시민에 해당하는 고대 그리스어 ‘데모스’(Demos)는 한 도시국가(polis)에서 정치적, 법적으로 자격을 갖춘 시민공동체를 의미하고, 이들은 자신과 자격을 갖추지 못한 노예나 외국인 같은 하층민들을 지배한다(Koselleck, 1992: 145). 마찬가지로 고대 로마에서 ‘포풀루스(populus)’라는 말은 군대 특히 보병을 의미했다. 가장 오래된 고대 라틴어 문서 중 하나인 *Carmen Saliare*에서 이 말은 ‘pilumnus’ 곧 보병대의 무기인 ‘pilum’(고대 로마군이 주로 사용했던 약 2m 길이의 長槍)의 운반을 의미했고, ‘popular’라는 말은 (적진을) ‘황폐화시키는’ 군사활동을 의미했다(Momigliano, 2005: 174). 이에 반해 ‘populus’에 속하지 않는 그 하층민들을 ‘plebs’라고 하여 구분하였다(Momigliano, 2005: 174~176). 이렇게 군사활동과 관련이 있던 이 ‘populus’(‘gens’, ‘natio’ 특히 ‘civitas’라고도 불린다)는 그 범위가 점점 하층부와 외부로 확대되어(Koselleck, 1992: 145), 결국은 고대 그리스의 ‘polis’와 같이 모든 종류의 공동체(Gemeinwesens)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로 사용된다(Gschnitzer, 1992: 155). 그런 한편 이 ‘Demos’나 ‘populus’ 또는 ‘Volk’는 법적, 정치적으로 검증된 지배계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피지배계층의 다수를 의미했고, 절대군주시대에 ‘Volk’는 신민의 총체를, 전체주의시대에는 엘리트의 지배대상을 의미했다. 이처럼 유사한 단어가 시대에 따라 위에서 아래로 향하거나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상호배타적인 정의를 나타내기도 하기 때문에, 개념들은 오직 변화하는 맥락으로부터 드러나게 된다

2) 필자를 위해 300쪽에 달하는 방대한 이 독일 논문을 발췌번역해 주고, 또 Koselleck의 개념사에 대해 유익한 조언을 해준 신충식 경희대 후마니타스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논문은 R. Koselleck을 비롯한 4명의 저자가 공동으로 작성했으며, 각 장별로 저자가 다르다. 아울러 고서체로 써어 있는 J. K. Bluntschli의 원저의 주요 부분을 해독해준 필자의 지도교수 정문길 고려대 명예교수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Koselleck, 1992: 145).

다음으로 내외관계는 내부와 외부의 대립을 개념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어휘를 통해서 도출된다. 예를 들어 그리스 도시국가의 'demos'는 그 외의 다른 '민족'을 의미하는 '코이논(koinon)' 또는 '에트노이(ethnoi)'와 구분되고, 제국 내외의 지배민족으로서 로마의 'populus'는 제국에 예속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하는 '젠티스(gentes)'나 '나치오네스(nationes)'와 구분된다(Koselleck, 1992: 145). 구조적으로 유사한 개념적 의도가 특정한 영역의 안과 밖을 구분할 때도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개념들은 신화적이거나 과학적인 관점토대와 기원토대, 종교적인 소명, 문화적-문명적 전파 또는 민족주의적 선입견이 함께 작동하기 때문에, 고유한 민족을 특징짓는 비대칭적 대립개념으로 발전할 수 있다(Koselleck, 1992: 146).

이와 같은 구조적 맥락을 통해 주요 '국민' 개념의 변화과정을 보면, 그리스의 'polis'와 'demos'는 민회(Volksversammlung)로서 모든 시민을 의미하며, 나아가 국정에 참여하는 주권자인 국민, 끝으로 공동체로서 국가를 지칭한다(Gschnitzer, 1992: 155~156). 또한 라틴어의 고대 'populus'는 원래 '전체 시민'을 의미했고, 나중에는 더 새로운 시민을 의미하는 'civitas'로 확대되었고, 부차적으로 '정치적 법적 요소'를 더 강하게 의미하게 된다. 그래서 'populus'는 집합적인 시민사회를 의미하면서도, 국가주권의 소유자인 국민의 뜻이 부각된다(Gschnitzer, 1992: 157). 이처럼 고대 그리스어나 라틴어 전통에서 '국민'에 해당하는 개념은 비슷한 진화과정을 거치고 있다.

한편 출생을 의미하는 라틴어 'natio'는 중세대학에서 같은 지역 출신의 외국인 학생집단을 의미하는 'nation'으로 불리다가, 나중에 지역성을 넘어 의견공동체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13세기 이후는 다시 '신자공동체'(ecclesiastical republic)의 대표를, 더 나아가 사회의 엘리트층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었다(Greenfeld, 1992: 4~5). 16세기 영국에서는 '엘리트'를 의미하는 이 'nation'이 일반 주민을 포괄하는 말로 사용되었고, 이 시기의 의미전환이 근대 'nation' 개념 출현의 계기가 된다(Greenfeld, 1992: 6). 그리고 이 모든 개념들은 프랑스혁명(1789)이라는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하여, '국민'(nation)은 한 국가의 모든 구성원을 포괄하게 된다(Koselleck, 1992: 147). 곧 "프랑스혁명은 주권의 개념을 확립했을 뿐 아니라 국가주권을 공유한 집합체를 'Nation'이라는 범주로 확정함으로써 중세적 신분질서를 타파하고 근대국

가의 구성원리를 확산시키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했다”(박명규, 2009: 64). 또한 “이 무렵 독일에서 ‘국민성’(Volkheit과 Volkstum)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했고, 처음으로 ‘프랑스 사람들’(peuple français)과 대비되는 ‘독일국민’(deutsches Volk)이라는 정치개념이 발생하였다”(Werner, 1992: 172). 이는 근대적인 국민의식 내지 민족의식이 싹트는 것이라고 하겠다. 특히 계층적으로 구획화된 ‘국민’ 개념에서 잠재적으로 민주적인 ‘국민’ 개념으로의 이행은 라이프치히전쟁(1813) 시 징집통보에 몰래 넣은 “유럽의 ‘전체’ 인민”(die ‘ganze’ Völker Europas)이라는 이름을 토대로 일어난다(Koselleck, 1992: 147). 곧 1800년을 전후한 선후관계의 맥락에서 ‘국민’ 개념을 보편화시킨 직접적인 계기는 전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국민과 유사한 개념들을 구분하면, ‘인민’(Leute, people)은 국가에 선행하는 인간 보편 개념을 의미하며(김성보, 2009: 76), ‘민족’ 역시 국가에 선행하는 개념으로서 주로 출신이나 관습 또는 계급이나 분파 등 정신적 공동체에 의거해서 기술된다. 이에 반해 “‘국민’은 어떤 영토 위에 조직화된 주민화를 의미하는 정치적 개념”이기 때문에(Koselleck, 1992: 384), 국가에 선행하는 개념이 아니라 오로지 국가에 의해서만 규정되는 개념이다.

요컨대 서양어에서 ‘국민’이라는 말은 전사와 비전사 또는 특정한 지위와 정치적 권리를 가진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영토와 종교, 문화 등의 측면에서 특정한 영역 안에 사는 사람과 바깥에 사는 사람을 구분하던 말에서, 프랑스혁명과 라이프치히전쟁을 계기로 근대 국민국가(nation state)의 평등한 구성원으로서 보편화된다.

2) 동양사의 국민 개념

국민(國民)은 서양과의 만남 이전에도 한자문화권에서 나름의 의미를 갖고 존재하던 개념이었는데, 이 또한 서양과 마찬가지로 관련 개념들의 상하관계와 내외관계를 통해 그 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 「주례(周禮)」, 「좌전(左傳)」, 「사기(史記)」 등 한자문화권의 대표적인 고전에서 이미 국민 개념이 쓰였다. 이때의 국민은 국(國, 봉건제후의 영지, 조공국)에 속한 민(民), 곧 백성이었다(강동국, 2005: 7). 전통사회에서 이보다 보편적으로 쓰인 국민 개념은 ‘국인(國人)’이었다. 곧 중국 주나라의 국(國) 개념은 거주지역을 뜻하는 성시(城市)를 의미하였으며, 춘추시대

국가들은 성과 곽(郭)으로 이루어진 도시국가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국민(國人)이라 불렀는데, 이들은 원래 국군(國君)과 귀족들의 친척이나 후예들인 지배계층이었으나, 나중에 범주가 확장되어 민의 범주에 속하게 되었다(김동택, 2002: 372~373).

「설문해자(說文解字)」(漢許慎/ 금하연·오채금, 2010: 1118; 엮정삼, 2010: 598~599)에 서도 '民'은 못사람(衆萌) 곧 백성을 뜻하며, 민의 고문인 '𡵓'은 싹이 나서 무성해지는 모양을 상형한 것으로 보인다(蓋象萌生籜靡之形). 또한 귀화한 백성(變民)을 '맹(萌)'이라 하여, 안에 있던 백성과 밖에서 들어온 백성의 차이를 두었다. 당시 '민'과 대립되는 개념인 '臣'은, 이 책에 따르면(漢許慎/ 금하연·오채금, 2010: 1180; 엮정삼, 2010: 121~122) "끌고 간다"는 뜻으로 군주를 섬기는 사람을 말하며, 구부러 복종하는 모양을 상형하였다(牽也. 事君者. 象屈服之形). 유교 경전에 보이는 '民' 개념도 백성을 뜻한다. 특히 「孟子」는 '盡心章 下篇 제14장'에서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이 그 다음이고, 군주는 가장 가볍다"(民爲貴社稷次之君爲輕)고 하여,³⁾ 민본주의적 혁명사상의 근원으로 여겨졌다. 이렇듯 유교사상은 이미 기원전 4세기에 민이 사회에서 최상의 가치를 갖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통치권력의 궁극적인 정당성의 원천은 민이라고 선포했다(신진욱, 2008: 24~25). 그러나 유교문화에서는 오늘날에는 모두 국민에 속하지만 '君'과 '臣', '民'의 관계는 균등하지 않고, '신'이 '민' 쪽에 크게 편중된 형태로 존재했다(木村幹, 1996: 109).

이러한 경향은 일본도 마찬가지로여서 메이지 초기 '신민·국민·인민'이 일본인 전체를 통일체로 받아들이는 말로 정착하기 전에는 '사민'(士民)과 '사민'(四民)을 주로 사용하였다. '士民'⁴⁾이란 그때까지 지배자와 피지배자, 곧 '士'와 '民', 무사와 서민 또는 사족(士族)과 평민이라는 2개의 서로 다른 신분을 하나로 통틀어서 표현하는 말이다(Saleh, 2008: 42). 이전에 단순히 '민'으로 표현되던 피치자에 대한 명

3) 동방미디어 > 동양고전 > 「孟子」 원문과 번역문 참조.

4) 일본의 근대 국가 형성과정에서 'nation'에 해당하는 정치용어로서 '士民'과 '신민', '황민'(皇民), '국가'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 용어는 '병치법'(並置法)이라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병치란 대립하는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말로 구성된 말로서, 그 구조는 의미론의 관점에서 보면 '및'의 관계를 나타낸다. '및'의 관계를 접속사를 빼고 조작 없이 갖다 붙인 병치는 일본어에는 드물지 않다. 이에 반해 '국민'은 병치가 아니라 종속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계층과 계층의 구별을 나타내지 않는다(龜井孝, 1974: 159~160).

칭은 에도막부 말기에 가면 ‘인민’, ‘민인’(民人), ‘국인’(國人), ‘중인’(衆人) 등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는데, 그 가운데서 드물게나마 ‘국민’이란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사람은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이다(박양신, 2008: 238). 후쿠자와의 저술에서 ‘국민’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西洋事情」이지만,⁵⁾ 아직 그것이 개념화된 것은 아니었다. 그가 ‘국민’의 의미를 논하면서, 그것이 서구의 ‘nation’ 개념임을 명시한 것은 「학문의 권장」(1872~76)과 「문명론지개략」(1875)이다(박양신, 2008: 238~239). 특히 후쿠자와는 「학문의 권장」 4편과 5편에서 이 ‘국민’은 중간계급(middle class)을 중심으로 장래에 형성되어야 할 기대상(期待像)으로서 제시하고 있다(飛鳥井雅道, 1984: 8). 이때 후쿠자와로서 국민의 개념화에 큰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당시에 발간된 영일사전을 들 수 있다. 영일사전에서도 초기에는 서양어 ‘nation’을 ‘인민’, ‘국인’으로, ‘people’을 ‘인민’으로 번역하다가,⁶⁾ ‘nation’에 ‘국민’이란 번역어가 등장하는 것은 1873년의 사전이 처음이고, 거의 모든 사전에서 ‘nation’의 설명으로 ‘국민’이 일반화되는 것은 1870년대말 이후이다(박양신, 2008: 239 각주 8) 참조).

영어의 ‘nation’은 ‘국민’과 함께 ‘민족’으로도 번역되었는데, 이 ‘민족’의 기표는 이질성을 보였다. 예를 들면 가토는 「國法汎論」(1879: 13ff) 2권 제2판 제2 ‘民種과 국민’에서 제목을 비롯하여 독일어 ‘Nation’에 해당하는 말로 ‘민종’을 쓴 반면, 종족(Stämme)을 ‘민족’으로 번역했다(37~41). 또 Bluntschli의 「지식인을 위한 독일 국가론」(1874)의 번역서인 「국가론」의 ‘국민과 영토’ 편에서 平田東助·平塚定二郎(1889: 61ff)은 이를 ‘족민’(族民)으로 번역했고, 10년 뒤에 이 책을 한역(漢譯)한 吾妻兵治(1899: 22ff)도 ‘족민’으로 번역했다. 그 밖에 국수주의·국민주의 논쟁 과정에서도 민족을 ‘민종’(民種)으로 표기한 경우가 있었다(安田浩, 1992: 67).

한편 같은 시대의 다른 개화지식인인 가토 히로유키(加藤弘之)의 초기 저작들

5) 이 책은 初編(1866)과 外編(1867)으로 구성되어 있고, ‘국민’이란 단어는 초편부터 등장하지만 그 빈도수는 극히 적어 아직은 우연한 사용인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번역서인 외편에 가면 ‘국민’이란 단어가 빈번히 사용된다(박양신, 2008: 238).

6) 번역을 통한 ‘인민’과 ‘국민’의 전과과정에서 Hepburn의 「和英語林集成」(초판, 1867) 사전의 해석이 일본 근대사상가의 의식과 용어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특히 그는 이 책의 3판에서 ‘nation’을 ‘국민’, ‘people’을 ‘인민’으로 한정함으로써 용어사용에 큰 전환이 이루어졌다. 왜냐하면 후쿠자와 등이 이들 사전의 영향을 받아 국체 개념을 재정의하는 과정에서 ‘nation’이라는 개념을 ‘국민’에 대응시켰기 때문이다(Saleh, 2008: 45~46).

에서는 '국민'이라는 단어는 거의 발견되지 않고, 주로 '억조'(億兆), '신민', '만민'(萬民), '민인', '서민'(庶民), '조민'(兆民) 등 전통적인 용어들을⁷⁾ 주로 사용하고 있다(박양신, 2008: 239). 같은 맥락에서 가토는 J. K. Bluntschli의 「일반국법학」을 번역한 「國法汎論」에서도 'Volk'(국민)의 번역어로 '신민', '국민', '일반'(一般), '홀크'(フォルク),⁸⁾ '국가', '민인', '인민', '민간' 등 다양한 용어를 쓰고 있다(山田央子, 1992: 232~233). 가토는 문맥을 살리기 위해 'Volk'를 '국가'로 번역하기도 했다. 메이지 초기의 공적 문서에서도 현재의 국민에 해당하는 용어로는 주로 '억조'를 썼다(飛鳥井雅道, 1984: 21). 예를 들면 1871년 7월14일에 공포한 「폐번치현(廢藩置縣) 조서」에서도 '억조'라는 말을 쓰고 있다.⁹⁾ 당시 관료로 재직하고 있던 가토가 '국민'에 해당하는 용어로 전통적인 용어를 주로 사용했던 것은 당시 관청의 이러한 경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근대 일본의 국민은 「대일본제국헌법」(1889)의 제정(제2장)에 따라 일단 '신민'으로 규정되었다.

3) 한국사의 국민 개념

다른 한자문화권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역대 왕조에서도 백성을 국가의 근본으로 여겼다. 특히 「書經」의 '민본사상'은¹⁰⁾ 고려 중기부터 확인할 수 있고, 고려시대

7) 예를 들어 1870년에 출간한 「眞政大意」에서는 국민에 해당하는 말로 '신민'과 '억조'를 널리 쓰면서 '민인'(13), '억조창생', '百姓', '천하억조'(20) 등의 용어도 함께 사용하고 있다.

8) 처음에 서양의 개념이 일본에 도입될 때는 한자로 번역되었지만, 동시에 가타카나로 표기하는 방법이 이용되었다. 가타카나는 불전 등 한문을 읽기 위한 보조 도구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외국어를 표시하는데 적합했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에는 서양의 개념을 번역하는 경우는 좀체 없고 거의 가타카나로 표시한다(柄谷行人, 2002, 송태욱 역, 2008: 84). 가토는 「국법범론」에서 서양의 개념을 일단 일본어로 번역하고, 그 옆이나 밑에 가타카나로 표기한 경우도 있고(Volk를 '國民'フォルク, Land를 '國土'ランド, Nation을 '民種'ナティオン, Völkerschaft를 '國民族'フォェルケルシャフト), 가타카나로만 표기한 경우도 있으며(Souveränität(주권)를 'スウヰレーテート'), 일본어나 가타카나로 표기하고 그 밑에 일본어로 자기 나름의 설명을 붙인 경우도 있다. 마지막 경우는 「按」으로 표기하고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설명을 덧붙였다.

9) 이 조서는 “짐이 생각건대 更始의 때를 맞아, 안으로 億兆를 保安하고, 밖으로 萬國과 대치하려고 하는 것은”(朕惟フニ更始ノ時二際シ内以テ億兆ヲ保安シ外以テ萬國ト對峙セント慾セハ)으로 시작하여, “너희들 群臣은 이런 짐의 뜻을 명심하라”(汝群臣其レ朕カ意ヲ体セヨ)로 끝을 맺고 있다(飛鳥井雅道, 1984: 21, 강조는 필자).

10) 「書經」 夏書 '五子之歌' 제4장에서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견고하여야 나라가 튼튼

에 피지배층을 가리키는 용어로는 ‘소민’(小民), ‘세민’(細民), ‘하민’(下民) 등이 있다(李泰鎮, 2001: 5~8). 이러한 민본사상은 조선에도 이어져, 「태종실록」에는 임금(人君)은 부모이고, 백성은 돌보아야 할 어린아이(赤子)이고, 군수는 유모라는 비유가 있다(李泰鎮, 2001: 16). 물론 이 ‘民惟邦本’은 결코 백성을 국가의 주인으로 인식하지는 않는다. 나라의 주인은 국왕과 양반관료이고, 소민은 어디까지나 통치의 대상이었다(李泰鎮, 2001: 24). 무엇보다 한국사나 중국사에서 서민 일반 또는 민중 개념으로 사용된 가장 대표적인 용어는 ‘인민’이었다(박명규, 2009: 124~125). 「조선왕조실록」에서도 국민에 해당하는 용어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인민’이다(박명규, 2009: 123). 한자문화권에서 ‘인’과 ‘민’은 노예주와 노예의 관계 또는 통치계급과 피통치계급의 관계를 의미했고, 조선에서도 이와 비슷한 형태로 사용되었다(박명규, 2009: 124~125). 따라서 이는 구한말 이후 서구에서 도입된 인간 보편을 의미하는 ‘인민’과는 다른 개념이다. 이와 함께 조선시대의 문헌에서도 중국의 고전과 마찬가지로, ‘국민’을 조공국인 조선의 백성 또는 번속(藩屬)의 백성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쓰고 있다.¹¹⁾ 그런데 18세기 영조대에 들어 국과 민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하여 백성과 군주가 함께 국가의 주인, 곧 군민일체(君民一體)를 의미하는 ‘민국’(民國) 사상이 대두한다(李泰鎮, 2001: 31~34). 그렇다고는 하나 구한말까지도 백성을 적자로 표상했던 통치이념이 유지되었고,¹²⁾ 이 시기에도 통치의 대상을 지칭하는 용어는 ‘민’, ‘백성’, ‘민인’, ‘인민’, ‘신민’ 등 다양했다(김윤희, 2009: 297~298).

그런 가운데 조선이 갑오개혁을 통해 조선왕조를 만국공법 체제상의 ‘자주독립국’으로 재편성하기 위해서는 국민 창출이 불가결의 과제였다. 이에 따라 19세기 후반에 이미 조선에서는 중세의 ‘백성’에서 근대의 ‘국민’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었다(김성보, 2009: 70). 당시 지식인들은 세계의 부강한 나라들은 모든 인민의 지식이 개명하기 때문에, 국민된 자는 널리 학식을 구하고, 기예를 길러 스

하다(民惟邦本本固邦寧)”고 하였다(동방미디어 > 동양고전 > 「書經」 원문과 번역문 참조).

11) 예를 들면 「승정원일기」에 수록된 1660년의 한 상소에는 “두루 넓은 땅의 백성은 또한 국민이 아님이 없습니다(普土之民, 亦莫非國民也)”와 1729년의 「비변사등록」의 기록 등이 있다(강동국, 2005: 7).

12) 1864년부터 1894년까지 「고종실록」의 ‘赤子’ 표현은 모두 85건에 달하는데, 특히 민심의 동요가 클 때 사용한 예가 많았다(김윤희, 2009: 299).

스로 자주독립하는 기틀을 삼아야 한다고 보았다(月脚達彦, 1995: 74). 이처럼 국민이 자주국가 건립의 근본이라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국민에게 '충군애국 하는 심성'을 요구하고 있다. 다시 말해 갑오개혁은 사적 소유권 등 국민의 권리보호를 부르짖고, 계몽주의를 위로부터 선취함과 동시에, 국민은 '짐-신민'이라는 '일군만민'(一君萬民) 체제로 수렴시키려는 것이었다. 갑오개혁 관련 법령에서 '국민' 호칭은 다양하지만, 대체로 '신민'으로 수렴되었다(月脚達彦, 1995: 74~75). 이 때문에 1896년 4월7일 창간된 「독립신문」의 국민 창출운동도 국경일 제정, 국기제양 운동, 애국창가 제창, 체조 보급에 머물렀고, 서민이 국정에 참여하는 것에는 매우 부정적이어서 의회개설을 요구하면서도 민선의원의 개설에는 극히 부정적이었다(月脚達彦, 1999: 15~25).

개화기 국민 개념의 사용 예를 보면, 유길준의 「서유견문」에서는 '인민'을¹³⁾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면서도 '민', '백성' 용어도 함께 쓰고 있고(김윤희, 2009: 298), 「독립신문」에서도 '인민'이라는 용어를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김윤희, 2009: 309), 「대한매일신보」에서는 '국민'과 함께 '인민', '민족', '동포'라는 단어들이 각각 수백 건 이상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김동택, 2002: 378 <표 1> 참조). 조선 후기 이래 일반적으로 '민인' 용어를 사용했던 집권자들도 1894년 이후에는 '인민' 용어를 더 자주 사용하고 있다(김윤희, 2009: 309). 그 이유는 근대조약체결과 서양 문물의 소개과정에서 '인민' 용어의 사용이 크게 증가했고, 또 같은 한자문화권의 청과 일본이 피통치자를 지칭하는 말로 '인민'을 널리 사용했기 때문이다(김윤희, 2009: 310).

한편 '민족'이라는 용어는 「황성신문」 1900년 1월12일자 '寄書'에 처음으로 등장한다. 이때의 민족 개념은 '동방민족', '백인민족'처럼 집합개념으로 등장한다. 그러나 1905년의 을사조약을 계기로 「대한매일신보」는 한반도의 주민집단을 동양 단위로부터 분리하여 인식하기 시작했고, 1906년 무렵부터 '한국민족', '대한민족' 등의 '민족' 용어가 등장한다(백동현, 2001: 171~172). 국민 개념은 공식적으로는 「홍범14조」(1894)에서는 '인민'으로 표기했다가, 결국 「대한국 국제」(1899, 제3·4조)

13) 예를 들면 제3편 '邦國의 권리'에서 "夫邦國은 一族의 人民이 一方의 山川을 할거하야"로 시작하고 있으며, 특히 제4편은 제목이 '人民의 권리'이며, "夫人民의 權利는 自由와 通義를 謂함이라"로 시작하여, 본문 중에서 '億兆人民', '各人', '天下의 人' 등의 표현을 쓰고 있다(유길준, 1895: 85, 109~110; 채훈 역, 1975: 376, 382, 띄어쓰기와 강조는 필자).

의 제정에 따라 대황제가 무한한 군권(君權)을 행사하는 대한국의 '신민'(subject) (김효전, 2000: 39~41) 곧 '일군만민' 체제로 수렴되었다.

요컨대 동양문화권의 '국민' 개념도 서양과 마찬가지로 전통적으로 '국민'과 '국인'처럼 내외관계를 구분하고, 또 '군', '신', '민'처럼 그 상하관계를 구분하였다. 서구의 근대 '국민' 개념이 도입된 이후 그 명칭은 '인민', '신민', '국민' 등으로 수렴되었으나, 일제시대까지도 모두가 평등한 '국민' 개념은 성립되지 않은 채, '국민'은 어디까지나 군주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을 의미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한자문화권의 각국이 서구에서 근대 '국민' 개념을 수용하기는 했지만, 이들 국가는 근대 국가와 전근대국가 사이에 영토적, 인적으로 상당한 연속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유럽의 각국과는 근대 '국민'이 창출되는 토대가 상당히 달랐다는 사실이다(三谷博, 2001: 218).

Ⅲ. 일제시대 국민 개념 분석

이제부터 구한말의 연장선상에서 일제시대 근대 국민 개념의 형성과정을 살펴보기로 하자. 일제 강점과 함께 한반도에는 이전의 수공국 국민과 조공국 국민 사이에 형성된 내외관계 대신에 식민지 지배국민과 피지배국민 또는 내지인(內地人)과 외지인(外地人)이라는 새로운 내외관계가 형성된다. 이와 함께 대한제국의 황제와 신민이라는 상하관계에서, 소위 대일본제국 '천황'의 적자 내지 신민이라는 새로운 상하관계도 형성된다. 이러한 새로운 내외관계와 상하관계의 형성은 일제시대 국민 개념의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또한 당시 한국인이 사용했던 국민 개념과 일본인이 사용했던 국민 개념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중요한 점은 식민통치 당국이 쓰던 국민 개념을 광복 이후 별다른 단절 없이 한국인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제시대에 사용되었던 국민 개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국민 개념을 파악하는데 초석이 된다고 하겠다.

<표 1> 국민 개념 공포 형식별 빈도표

공포 형식	빈도(회)	백분율(%)
훈시	116	69.0
유고	37	22.0
내각고유	8	4.8
내각훈시	4	2.4
담화	1	0.6
성명	1	0.6
훈령	1	0.6
모 두	168	100.0

그러면 일제시대 조선총독이 당시 한반도 재주민을 대상으로 발포한 각종 유고와 당시 관료를 대상으로 발포한 각종 훈시를 분석하여, 국민 개념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기로 하자. 총독이 훈시를 발한 대상은 총독부와 소속관서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도 더러 있었지만, 대부분 도지사나 형무소장, 관립학교장, 전매지국장, 재판소와 검사국 감독관, 우편국장, 사법관, 내무부장 등 관리자에 해당하는 관료였다. 구체적인 분석대상 문헌은 일제시대 35년 동안 조선총독이 발포한 훈시 116건과 유고 37건, 내각고유(告諭) 8건, 내각훈시 4건, 그 밖에 담화와 성명, 훈령이 각각 1건씩 등 모두 168건이었다(<표 1> 참조). 이는 「朝鮮總督府官報總索引」(한국학문헌연구소, 1990: 311~316, 320~322)의 유고·고유와 훈시를 바탕으로 하고,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전자정보로 제공하는 「관보」¹⁴⁾에서 '유고'와 '훈시'로 검색하여, 색인에서 빠진 부분을 일부 보완하였다.¹⁵⁾ 원래 이에 해당하는 자료는 모두 197건이었으나, 이 가운데 국민 개념과 관련한 용어가 1건도 없는 것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각 유고 또는 훈시 안에서는 국민에 해당하는 복수의 용어를 추출했으며, 같은 용어가 2번 이상 출현할 때는 1회로 계산했다. 각 문건의 국민 관련 용어는 최소 1건에서 최대 14건까지 다양했다. 다만 국민 관련 용어 가운데 '조선인', '일본인', '내지인'(內地人), '내선인'(內鮮人) 등은 보편적으로 자주 사용되었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14) 국립중앙도서관 > 원문정보DB > 관보(1894~1945)(www.dlibrary.go.kr/JavaClient/jsp/wonmun/index.jsp)에서 검색.

15) 조선총독이 발포한 유고와 훈시 중 「朝鮮總督府官報」 수록분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195건).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한승연(2010: 9) 참조.

1. 국민 개념 분석

이제부터 <표 2>와 <표 3>을 바탕으로 일제 35년 동안 국민 개념의 변화 과정을 분석하기로 하자. 우선 일제시대 국민에 해당하는 용어는 분석대상 자료를 기준으로 할 때, 출현 회수는 전부 683회에 ‘국민’과 ‘관민’, ‘신민’, ‘민중’ 등을 포함하여 모두 65가지나 확인할 수 있었다. 국가를 지칭하는 용어가 32가지였던 것과 비교하면 2배가 넘는다.¹⁶⁾ 이처럼 국민의 기표가 매우 다양하여 <표 2>에서는 각각의 용어들을 범주화하여 개별 출현빈도를 표시하였고, <표 3>에서는 각 시기별로 기술의 편의를 위해 각 용어의 출현빈도가 5회 이상인 것만 따로 표시하고, 그 미만은 기타로 처리하였다.¹⁷⁾ 각 용어에 대한 범주화의 기준은 전근대적 개념과 근대적 개념으로 크게 나누고, 그 안에서 다시 출현빈도와 기의를 고려하여 세분하였다. 전근대적 개념은 크게 신민과 관민으로 나누고, 이 두 범주에 속하지 않는 용어들은 기타 전근대적 개념으로 묶었다. 근대적 개념은 국민, 인민, 민족, 대중, 민중 등 다양하지만 인민과 민족은 출현빈도가 낮아서 국민 범주로 묶었고, 근대 이후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민중과 이를 군집 개념으로 파악하는 대중은 다소 그 의미의 차이가 있지만(吉原功, 1994: 622), 대중의 출현빈도가 낮아 민중 범주로 한 데 묶었다.

먼저 <표 2>를 보면 국민에 해당하는 용어 전체 683회 가운데 상대적으로 근대적 개념에 속하는 국민과 민중 범주에 속하는 용어가 396회(58.0%), 전근대적 개념에 속하는 신민, 관민, 기타 등이 287회(42.0%)로 나타나, 대체로 전자가 후자보다 16.0% 정도 더 많았다. 이는 같은 시기 국가 개념으로 근대적인 용어보다 전근대적인 용어를 2배 이상 많이 사용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라 하겠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제시대를 통해 아직 근대 국민 개념은 확립되었다기보다 형성과정에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또한 65가지의 용어를 크게 국민, 신민, 관민, 민중, 기타 전근대적 개념 등 5가지 범주로 나눌 때, 국민 범주에 속하는 용어가 219회(32.1%)로 전체의 약 1/3을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민중 범주가 177회(25.9%)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16) 이하 ‘국가’ 개념과 관련한 사항은 한승연(2010: 1~27)을 참조하기 바람.

17) 조선총독의 유고와 훈시를 해독하는 일은 매우 지난한 작업이어서, 3회에 걸쳐 확인을 했으나, 그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 관련 용어의 전체적인 출현 경향에는 변함이 없으며, 문서의 해독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면, 이는 전적으로 필자의 책임이다.

관민 범주가 135회(19.8%)로 세 번째로 많았다. 그 밖에 신민 범주가 83회(12.2%), 기타 전근대적 개념이 69회(10.1%)로 다소 있었다.

<표 2> 국민 개념별 빈도표

국 민			신 민			관 민(회/%)		
개념	빈도	비율	개념	빈도	비율	개념	빈도	비율
국민	91	13.3	황국신민	18	2.6	관민	68	10.0
동포	33	4.8	상하	15	2.2	강내관민	25	3.7
인민	22	3.2	신민	13	1.9	민(백성)	20	2.9
우리(들)국민	20	2.9	총후국민	13	1.9	관민일반	5	0.7
전국민	12	1.8	제국신민	9	1.3	조야(일반)	5	0.7
민족	10	1.5	황민	6	0.9	일반관민	4	0.6
일반인민	9	1.3	(폐하의)적자	3	0.4	관하일반	3	0.4
주민	8	1.2	(폐하의)신자	2	0.3	군민	3	0.4
일반국민	5	0.7	군신	2	0.3	군관민	1	0.1
일본국민	5	0.7	일군하만민	1	0.1	士民	1	0.1
아국민	3	0.4	황국민	1	0.1			
공민	1	0.1						
모 두	219	32.1	모 두	83	12.2	모 두	135	19.8
민 중			기타 전근대적 개념					
개념	빈도	비율	개념	빈도	비율	개념	빈도	비율
민중	76	11.1	중서	16	2.3	중민(衆民)	2	0.3
일반(인)	27	4.0	사민(斯民)	7	1.0	창생(蒼生)	2	0.3
일반민중	24	3.5	1억/2천3백만	6	0.9	조민(兆民)	2	0.3
양민	14	2.0	억조(億兆)	5	0.7	거민(居民)	1	0.1
공중	11	1.6	각인	4	0.6	군려(群黎)	1	0.1
만민	7	1.0	반도인	4	0.6	민려(民黎)	1	0.1
대중	5	0.7	만중(萬衆)	3	0.4	민서(民庶)	1	0.1
서민	5	0.7	민인(民人)	3	0.4	방인(邦人)	1	0.1
세인	4	0.6	생민	3	0.4	여중(輿衆)	1	0.1
일반대중	3	0.4	중(衆)	3	0.4	제중(諸衆)	1	0.1
군중	1	0.1	반도민	2	0.3	모 두	69	10.1
모 두	177	25.9				모 두	683	100.0

비고: 복수계산, 각 칸의 비율은 각 시기별 모두에 대한 백분율임.

다음으로 국민을 지칭하는 단일 용어로는 '국민'이라는 용어가 전체 683회 가운데 91회(13.3%)로 가장 많았고, '민중'이 76회(11.1%), '관민'이 68회(10.0%)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이들 3개 용어는 각각 전체에서 1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여, 일

제시대를 대표하는 국민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사실은 이들 용어들과 유사한 용어들을 합치면 더 분명해진다. 곧 ‘국민’과 유사한 ‘우리(들)국민’ 20회(2.9%)와 ‘전국민’ 12회(1.8%), ‘일반국민’과 ‘일본국민’ 각각 5회(0.7%), ‘아국민’ 3회(0.4%)를 합치면 ‘국민’에 해당하는 용어는 모두 136회(19.9%)로 전체의 약 1/5을 차지하며 가장 많다. 또한 ‘관민’과 유사한 ‘강내관민’ 25회(3.7%)와 ‘관민일반’ 5회(0.7%), ‘일반관민’ 4회(0.6%)를 합치면 모두 102회(14.9%)나 되고, ‘민중’도 이와 유사한 ‘일반민중’ 24회(3.5%)를 합치면 모두 100회(14.6%)에 달한다. 그리고 이들 셋을 합치면 338회(49.5%)로 전체의 약 절반에 달한다. 이들 용어 외에 20회 이상의 출현빈도를 보인 용어로는 ‘동포’가 33회(4.8%), ‘일반(인)’이 27회(4.0%), ‘인민’이 22회(3.2%), ‘민(백성)’이 20회(2.9%) 있었다. 따라서 일제시대를 대표하는 ‘국민’ 개념은 크게 잡아도, ‘국민’과 ‘관민’, ‘민중’, ‘동포’, ‘일반(인)’, ‘인민’, ‘민(백성)’ 정도로 압축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더라도 ‘관민’과 ‘민(백성)’을 제외하면, 용어상으로는 근대적인 국민 개념을 보편적으로 더 많이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일본제국의 국민을 지칭하는 공식 용어인 ‘신민’은 ‘황국신민’ 18회(2.6%)와 ‘신민’ 13회(1.9%), ‘제국신민’ 9회(1.3%) 등을 합쳐도 40회(5.9%)뿐이었다. 근대적인 국민 개념이 정착하기 전에 널리 사용되었던 ‘사민’(士民)이라는 용어는 1회(0.1%)뿐으로, 일제시대 이후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메이지 초기의 공식적인 국민 용어였던 ‘억조’도 5회(0.7%)로 그 출현빈도가 매우 낮았다.

이번에는 <표 2>를 통해서 일제시대 국민을 지칭하는 용어의 사용과 관련하여 주목할 사항을 분석해보기로 하자. 첫째, 근대적인 국민의 기표 가운데 ‘국민’에 비해 ‘인민’의 출현빈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향은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다른 책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곧 조선총독부가 자신의 조선 통치 실적을 내외에 홍보하기 위해 편찬한 「시정25년사」(1935)와 「시정30년사」(1940) 등에 나오는 이들 용어의 출현빈도를 보면, 대체로 ‘국민’이 다른 용어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이 출현함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인민’이라는 용어는 제2기 말에 속하는 제4대 야마나시(山梨半造) 총독부터는 거의 출현하지 않으며, 일제 말기가 되면 전혀 출현하지 않는다. 그 대신 일제 후기로 갈수록 ‘관민’이나 ‘신민’이라는 용어가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¹⁸⁾ 이는 정부와 민간을 통해 1880년대 후반까지는

18) <조선총독별 주요 국민 개념 빈도표>

‘인민’이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으나(飛鳥井雅道, 1984: 8), 1881년 정변 이후 ‘신민’이라는 개념이 창출되고(飛鳥井雅道, 1984: 50), 결국 민권운동을 통해 이 인민은 정치적, 사회적, 사상적인 훈련을 거쳐 ‘국민’으로 성장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飛鳥井雅道, 1984: 62). 각주 18)에서 알 수 있듯이 역대 조선 총독들은 메이지유신(1868) 당시, 아직 태어나지 않았거나 10대 이하였기 때문에 1870~80년대의 이러한 경향에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인민은 군주국의 신민과 공화국의 구성원 둘 다를 의미했고, 일본의 「舊皇室典範」에서도 인민을 신민과 같은 의미로 사용한 예가 있듯이, 이 당시 ‘인민’은 근대국가의 주체인 국민보다는 신민 쪽에 가까웠다고 하겠다(西角純志, 2004: 169). 게다가 3·1운동이라는 대규모 민중운동을 당한 식민통치 당국으로서는 성난 민중을 달래기 위해 서둘러 ‘민중’을 내세울 수밖에 없었다. 이와 함께 조선총독들은 소위 ‘천황폐하’의 신하로서 ‘관민’이나 ‘신민’처럼 상하관계가 분명한 개념에는 익숙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일반(인)’ 27회(4.0%), ‘일반민중’ 24회(3.5%), ‘일반인민’ 9회(1.3%), ‘일반국민’과 ‘관민일반’, ‘조야(일반)’가 각각 5회(0.7%), ‘일반관민’ 4회(0.6%), ‘관하일반’과 ‘일반대중’ 각각 3회(0.4%) 등 국민을 지칭하는 용어 앞뒤에 ‘일반’이라는 용어를 조합해서 쓴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는 앞에서도 논의했듯이 가토 히로유키가 ‘국민’(Volk)을 ‘일반’으로 번역한데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인 특

역대 조선총독(생몰)	재임기간	인민	국민	민중	관민	신민
寺內正毅(1852~1919)	1910.8.29~1916.10.9	26	32	26	9	10
長谷川好道(1850~1924)	1916.10.16~1919.8.12	3	2	6	1	2
齋藤實(1858~1936)	1919.8.12~1927.12.10	9	22	26	13	3
山梨半造(1864~1944)	1927.12.10~1929.8.17	1	8	6	5	-
제2차 齋藤實	1929.8.17~1931.6.17	-	7	4	3	-
宇垣一成(1868~1956)	1931.6.17~1936.8.5	3	34	32	26	3
南次郎(1874~1955)	1936.8.5~1942.5.29	3	131	58	48	73
小磯國昭(1880~1950)	1942.5.29~1944.7.22	-	60	16	3	10
阿部(信行)(1875~1953)	1944.7.24~1945.9.28	-	10	4	4	3

출처: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시정25년사」(1935), 「시정30년사」(1940)의 역대 총독별 기록을 주요 자료로 하고, 1940~1945년은 「朝鮮總督府 施政年報」(1940년판)와 水田直昌(1974: 83~113)을 참고하였다. 각 용어의 출현빈도는 이들 자료의 '필자 소장 미출간 번역본'에서 한글의 '찾기' 기능으로 확인하였다. 단체명에 포함된 용어는 제외하였고, 법령명에 포함된 용어는 포함하였다.

유의 언어습관일 수도 있다. 이에 반해 ‘우리(들)국민’(20회, 2.9%)이나 ‘아국민’(3회, 0.4%)처럼 ‘우리’를 강조하는 ‘국민’ 개념이 있지만, 국가 개념에 비해서는 그 출현 빈도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민족’이라는 용어의 출현빈도가 10회(1.5%)로 매우 낮다는 점이다. 이는 다른 용어에 비해 ‘민족’이라는 용어가 일본근대사에서 상대적으로 늦게 등장한 점도 있지만(강동국, 2005: 17), 조선총독부가 의도적으로 사용을 기피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우선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한민족의 민족 감정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식민통치 초기인 제1기에는 1번도 사용하지 않았고, 주로 제3기(8회, 2.2%)에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제2기 이후의 사용례를 보더라도 ‘조선민족’이나 ‘야마토(大和)민족’처럼 한국과 일본의 특정 민족을 지칭한 경우는 단 1번도 없고, “국가와 민족” 또는 “국가의 흥룡과 민족의 안녕”, “국본의 배양과 민족의 번영”, “민족국가” 등 일반적인 ‘민족’ 개념으로 썼고, 일제 말기가 되면 “동아 각 민족” 또는 “대동아민족”처럼 동아시아 민족을 전부 포괄하는 개념으로 썼던 데서 알 수 있다.¹⁹⁾ ‘민족적’이라는 형용사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아서 포용적이면서도 배제적인 감성테스트(Gesinnungstest)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Koselleck, 1992: 398), 자칫 그것이 배제적인 감성으로 폭발하면 한-일 두 민족 간의 대립을 격화시킬 수 있다.

넷째, 출현빈도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중서’(衆庶), ‘사민’(斯民), ‘억조’, ‘만중’(萬衆), ‘민인’, ‘창생’(蒼生) 등과 같은 전통적인 용어도 다양하게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이 점 역시 당시 일본 관료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가토의 여러 저서와 번역서에서 전통적인 국민 용어를 널리 사용했던 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한편으로는 전통국가에서 근대국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나타나는 전통과 근대의 혼재현상이라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이들 국민 개념들을 상하관계와 내외관계 측면에서 살펴보면, 먼저 국민을 지칭하는 기표가 ‘국민’, ‘신민’, ‘관민’, ‘민중’ 등 그 무엇이든 거기에 소위

19) 분석대상 자료 가운데 ‘민족’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10건은 다음과 같다. 우선 유고를 보면, 1919년 7월1일자(관보, 같은 날짜 호외)와 1933년 11월10일자(15일자), 1945년 7월7일자(같은 날짜) 등 3건이 있다. 다음으로 훈시를 보면, 1927년 5월17일자(18자)를 비롯하여, 1938년 4월 19일자(20일자), 1939년 4월18일자(19일자), 1941년 4월23일자(24일자), 같은 해 12월10일자(11일자), 1942년 10월27일자(28일자), 1945년 4월5일자(같은 날짜) 등 7건이 있다.

일본 '천황'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군주와 나머지 국민이 상하관계로 구분된다. 이러한 상하관계는 특히 신민 범주에 속하는 용어들을 통해 분명해진다. 예를 들어 '황국신민' 18회(2.6%)를 비롯하여, '신민' 13회(1.9%), '제국신민' 9회(1.3%), '황민' 6회(0.9%)는 물론, 상하 15회(2.2%), '(폐하의)赤子' 3회(0.4%), '(폐하의)臣子'와 '군신' 각각 2회(0.3%), '일군하만민' 1회(0.1%) 등은 직접적으로 군주와 나머지 국민을 구분하는 개념이다. 특히 '적자'(어린이)와 '신자'(신하와 자식)라는 말은 유교적인 군신관계에서 나온 말로서, 통치자에 대해 국민을 자식 내지 어린이로 인식함으로써 이들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들 용어의 구조를 보면 '관+민', '신+민', '황+민', '상+하', '군+신' 같은 병치법을 쓰고 있다. 다음으로 내외관계 면에서, 이들 용어의 대부분은 소위 '조선인'만을 지칭하든가 소위 '제민신민'으로서 '일본인'과 '조선인' 또는 제국관도의 다른 신민을 포괄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그러면서도 '조선민중'과 '일본민중', '일본국민'과 '그 밖의 국민', '반도주민'과 '제국관도의 주민' 등 소위 '내지인'과 '외지인'의 구분은 분명히 있다. 분석대상 자료 중 마지막 훈시에서도 "1억 국민이 당면한 초미의 국난은 동시에 반도재주민을 황민으로 완성시키는 事象 그 자체이고"("朝鮮總督府官報", 1945년 4월5일자 호외)라고 하여, 아직 한국인은 황민이 된 것이 아니라 황민이 되어야 할 존재임을 말해주고 있다. 그런 가운데 일제의 한국인 동화의 방향도 강점 초기의 "충량한 신민" 또는 "충량한 국민"에서, 일제 말기에 고도 국방국가가 되면 "충량한 황민"으로 거듭난다.²⁰⁾

2. 시기별 국민 개념 분석

그러면 이번에는 <표 3>을 통해 이들 각각의 용어들이 일제시대 각 시기별로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각 시기별로 국민 용어의 출현빈도를 보

20) 일본 '천황'이 공포한 「교육에 관한 칙어」(1890)에 따라 일본제국의 국민 형성의 목표는 "충량한 국민(신민)"을 창출하는 것이었고, 1911년에 공포한 「조선교육령」(칙령 제229호) 제2조에서 "교육은 교육에 관한 칙어의 취지에 기초해 충량한 국민을 육성함을 본의로 한다"("朝鮮總督府, 1916: 제15집, 33)고 함으로써, 이것이 한국인에게도 적용되었다. 그러다가 일제 말기가 되면, 고이소(小磯) 총독은 도지사에게 훈시에서 일반 衆庶들을 거듭 지도하여 '충량한 황민'으로 만들라고 하였다("朝鮮總督府官報", 1942년 6월29일자).

면 제1기(1910년 8월29일~1919년 2월28일)는 전체 683회 가운데 158회(23.1%), 제2기(1919년 3월1일~1931년 9월17일)는 153회(22.4%), 제3기(1931년 9월18일~1945년 8월15일)는 372회(54.5%)로 제3기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이는 제3기가 다른 시기에 비해 기간이 길고, 또 전시체제로 접어들면서 훈시의 연평균 공포 빈도가 잦았을 뿐 아니라, 훈시의 내용도 길어서 단일 훈시에서 다수의 용어가 출현했기 때문이다. 일제시대 전체를 통해 시기에 상관없이 가장 보편적으로 쓰인 국민 개념은 역시 ‘국민’이다. 곧 제1기에는 전체 158회 가운데 19회(12.0%), 제2기에는 전체 153회 가운데 19회(12.4%), 제3기에는 전체 372회 가운데 53회(14.2%)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다만 각 시기를 대표하는 국민 용어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표 3> 시기별 국민 개념 빈도표

국민 개념		제1기		제2기		제3기		모두(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국민	국민	19	12.0	19	12.4	53	14.2	91	13.3
	동포	1	0.6	8	5.2	24	6.5	33	4.8
	인민	20	12.7	1	0.7	1	0.3	22	3.2
	우리(들)국민	1	0.6	3	2.0	16	4.3	20	2.9
	전국민	-	-	-	-	12	3.2	12	1.8
	민족	-	-	2	1.3	8	2.2	10	1.5
	일반인민	8	5.1	1	0.7	-	-	9	1.3
	주민	3	1.9	-	-	5	1.3	8	1.2
	일반국민	-	-	2	1.3	3	0.8	5	0.7
	일본국민	-	-	-	-	5	1.3	5	0.7
	그 밖에	1	0.6	1	0.7	2	0.5	4	0.6
모 두		53	33.5	37	24.2	129	34.7	219	32.1
민중	민중	15	9.5	37	24.2	24	6.5	76	11.1
	일반(인)	7	4.4	13	8.5	7	1.9	27	4.0
	일반민중	4	2.5	11	7.2	9	2.4	24	3.5
	양민	8	5.1	3	2.0	3	0.8	14	2.0
	공중	7	4.4	4	2.6	-	-	11	1.6
	만민	2	1.3	-	-	5	1.3	7	1.0
	대중	-	-	1	0.7	4	1.1	5	0.7
	서민	1	0.6	4	2.6	-	-	5	0.7
	그 밖에	1	0.6	3	2.0	4	1.1	8	1.2
	모 두		45	28.5	76	49.7	56	15.1	177

관민	관민	9	5.7	23	15.0	36	9.7	68	10.0
	강내관민	-	-	2	1.3	23	6.2	25	3.7
	민(백성)	13	8.2	2	1.3	5	1.3	20	2.9
	관민일반	2	1.3	-	-	3	0.8	5	0.7
	조야(일반)	-	-	1	0.7	4	1.1	5	0.7
	그 밖에	4	2.5	1	0.7	7	1.9	12	1.8
	모 두	28	17.7	29	19.0	78	21.0	135	19.8
신민	황국신민	-	-	-	-	18	4.8	18	2.6
	상하	2	1.3	1	0.7	12	3.2	15	2.2
	신민	6	3.8	-	-	7	1.9	13	1.9
	총후국민	-	-	-	-	13	3.5	13	1.9
	제국신민	6	3.8	2	1.3	1	0.3	9	1.3
	황민	-	-	-	-	6	1.6	6	0.9
	그 밖에	2	1.3	1	0.7	6	1.6	9	1.3
모 두	16	10.1	4	2.6	63	16.9	83	12.2	
기타 전근대적 개념	중서	2	1.3	3	2.0	11	3.0	16	2.3
	사민(斯民)	4	2.5	2	1.3	1	0.3	7	1.0
	1억/2천3백만	-	-	-	-	6	1.6	6	0.9
	억조(億兆)	1	0.6	-	-	4	1.1	5	0.7
	그 밖에	9	5.7	2	1.3	24	6.5	35	5.1
	모 두	16	10.1	7	4.6	46	12.4	69	10.1
모 두	158	23.1	153	22.4	372	54.5	683	100.0	

비고: 복수계산, 각 칸의 비율은 각 시기별 모두에 대한 백분율임.

각 시기별로 국민 용어의 출현빈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1기에는 국민을 지칭하는 용어로 전체 158회 가운데 '인민'이 20회(12.7%)로 가장 많았고, '국민'이 19회(12.0%)로 두 번째로 많았다. 특히 이 '인민'이라는 용어는 '일반인민' 8회(5.1%)와 합치면 모두 28회(17.7%)로 '국민'을 9회나 상회하며 제1기를 대표하는 국민 용어라고 하겠다. 더욱이 이 용어는 관료를 대상으로 한 훈시에서만 사용되었다(<표 4> 참조). 다만 총독별로는 거의 대부분 초대총독인 데라우치(寺內正毅)가 사용하였고, 각주 18)의 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1935년에 편찬된 「시정25년사」에서도 데라우치 총독시대의 기록에서 다른 총독에 비해 '인민'이라는 용어가 훨씬 많이 등장하고 있다. 이는 1910년대까지는 '국민'과 함께 '인민'이라는 용어도 관료들 사이에서 널리 사용했음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물론 이때의 '인민'은 앞에서 지적했듯이 '신민'의 의미에 가까웠다. 그 밖에 '민중'이 15회(9.5%), '민'이 13회(8.2%)로 다소 있었고, '관민'이 9회(5.7%)로 약간 있었다. 여기서 '민'은 단독으로

‘민’으로 쓰여 백성(夕_ミ)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었고, ‘지방민’이나 ‘부민(府民)’처럼 다른 용어와 합성어로 쓰인 경우도 있었다.

다음으로 제2기를 보면 전체 153회 가운데 ‘민중’이 37회(24.2%)로 가장 많아서 제2기를 대표하는 국민 용어로 나타났다. 여기에 ‘일반민중’ 11회(7.2%)를 더하면 모두 48회(31.4%)로 전체의 약 1/3을 차지한다. ‘관민’이 23회(15.0%)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특히 전기에 비해 비율로 2.6배 이상 증가했다. 제2기에 국민을 지칭하는 용어로 ‘민중’과 ‘관민’이 이토록 두드러지는 이유는 제1기와 제2기의 구분 기준이 되는 3·1운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곧 한국 민중의 ‘만세소요사건’(3·1운동을 의미)을 당한 식민통치 당국으로서의 소위 ‘조선 민중’의 마음을 달래고, ‘관민’이 일치협력하여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이들 용어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국민’은 19회(12.4%)로 세 번째로 많았으며, ‘일반(인)’이 13회(8.5%)로 다소 있었고, ‘동포’도 8회(5.2%)로 약간 있었다.

마지막으로 제3기를 보면 전체 372회 가운데 ‘국민’이 53회(14.2%)로 가장 많았고, 여기에 ‘우리(들)국민’ 16회(4.3%)와 ‘일반국민’ 3회(0.8%)를 합치면 ‘국민’은 모두 72회(19.4%)로 늘어난다. ‘관민’도 36회(9.7%)로 상당히 많았으며, 여기에 ‘강내관민’ 23회(6.2%)와 ‘관민일반’ 3회(0.8%)를 합치면 ‘관민’은 모두 62회(16.7%)나 된다. ‘강내관민’이라는 용어는 ‘국가’를 지칭하는 용어로서 ‘강내(疆內)’가 제2기에 처음 등장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제2기에 처음 나타난 이래 제3기에 그 출현빈도가 크게 증가하였다. 따라서 제3기에는 국민을 지칭하는 용어로 ‘국민’과 ‘관민’을 널리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민중’도 24회(6.5%)로 전기(37회, 24.2%)보다는 비율이 크게 줄었지만 상당수 사용되었고, ‘동포’도 24회(6.5%)나 있었다. ‘황국신민’ 18회(4.8%), ‘충후국민’(후방의 국민을 뜻함) 13회(3.5%), ‘전국민’ 12회(3.2%), ‘황민’ 6회(1.6%), ‘일본국민’ 5회(1.3%) 등 전시체제와 관련 있는 다양한 용어들이 제3기에 처음으로 등장했다. ‘상하’라는 용어도 12회(3.2%)로 이전 시기에 비해 사용빈도가 크게 늘었으며, 인구 개념으로 ‘국민’을 나타내는 ‘1억’ 또는 ‘2천3백만’ 같은 용어(6회, 1.6%)도 처음으로 등장했다. 이전에도 대체로 제2기까지는 ‘반도 2천만 동포’ 내지 ‘2천만 민중’ 등 한반도 재주민을 지칭하는 표현을 사용하다가, 제3기가 되면 제국 전판도의 국민을 지칭하는 ‘9천만 국민’, ‘9천만 동포’, 나아가 ‘1억 동포’, ‘1억 국민’ 등의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들 용어들은 제2기와 제3기를 구분하

는 기준인 전쟁과 깊은 관련이 있다. 곧 만주사변 이래 중일전쟁, 태평양전쟁으로 전쟁이 확대되면서 전시동원체제의 구축을 위해 1938년에 일본에서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하여 고도 국방국가를 건설함으로써, '3천만 민중' 나아가 '1억 국민'의 전면적인 협력을 얻기 위해(「朝鮮總督府官報」, 1938년 4월20일), 국민 개개인을 강조하는 인구 개념을 들고 나온 것이다. 대체로 전시가 되면 국가는 국민에 대해 평상시보다 더 많은 충성과 절대복종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국민 용어의 사용을 통해서도 이를 알 수 있다.

3. 유고·훈시 공포 대상별 국민 개념 분석

이번에는 유고·훈시의 공포 대상별, 곧 국민과 관료로 나누어서 국민 용어의 사용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자. 우선 전체 683회 가운데 국민을 대상으로 공포한 유고에서 187회(27.4%), 조선총독부와 소속관서 관료를 대상으로 한 훈시에서 496회(72.6%)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유고보다는 실무 관료에 대한 훈시가 더 잦은 것은 행정실무 면에서 당연하다고 하겠다. 국민 개념의 범주를 대상별로 보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유고에서는 국민 범주의 개념이 54회(28.9%)로 가장 많았고, 관민 범주가 47회(25.1%), 민중 범주가 38회(20.3%)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이들에 비해 신민 범주는 28회(15.0%), 기타 전근대적 개념은 20회(10.7%)로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낮았으나, 전체에 대해 1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였다. 관료를 대상으로 한 훈시에서도 국민 범주가 165회(33.3%)로 전체의 1/3을 차지하며 가장 많았으나, 민중 범주가 139회(28.0%)로 두 번째로 많았고, 관민 범주가 88회(17.7%)로 그 다음이었다. 이들에 비해 신민 범주는 55회(11.1%), 기타 전근대적 개념은 49회(9.9%)로 국민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다음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공포한 유고에서는 국민을 지칭하는 말로 '국민'이 27회(14.4%)로 가장 많았고, '관민'이 21회(11.2%)로 두 번째로 많았다. 하지만 '관민'과 '강내관민' 19회(10.2%)를 합치면 모두 40회(21.4%)로 '국민'과 '전국민' 7회(3.7%), '우리(들)국민' 3회(1.6%), '일반국민' 1회(0.5%)를 합친 38회(20.3%)와 거의 비슷하다. 따라서 실제로는 국민을 대상으로 상하관계가 분명한 '관민'과 국가 구

성원의 평등을 전제로 하는 ‘국민’이라는 용어를 동시에 널리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한반도 내의 관민만을 의미하는 ‘강내관민’이라는 용어는 관료(6회, 1.2%)에 비해 국민(19회, 10.2%)을 대상으로 훨씬 더 많이 사용했다. 그 밖에 ‘민중’이 15회(8.0%), ‘신민’(6회, 3.2%)과 ‘황국신민’, ‘제국신민’(각각 4회, 2.1%)을 합친 ‘신민’이 모두 14회(7.5%)로 다소 있었다.

셋째로 관료에 대한 혼시를 보면, 국민을 지칭하는 단일 용어로는 ‘국민’이 64회(12.9%), ‘민중’이 61회(12.3%)로 비슷한 비율로 가장 많았다. ‘관민’도 47회(9.5%)로 상당수 있었다. 이를 비슷한 용어끼리 묶어서 보더라도 그 경향은 같다. 곧 ‘국민’과 ‘우리(들)국민’ 17회(3.4%), ‘전국민’ 5회(1.0%), ‘일반국민’ 4회(0.8%)를 합치면 ‘국민’이 모두 90회(18.1%)로 가장 많았다. 또한 ‘민중’과 ‘일반민중’ 17회(3.4%)를 합치면 ‘민중’이 모두 78회(15.7%)로 역시 두 번째로 많았다. ‘관민’도 ‘강내관민’ 6회(1.2%)와 ‘관민일반’ 5회(1.0%)를 합치면 ‘관민’이 모두 58회(11.7%)로 세 번째로 많았다. 그리고 ‘동포’와 ‘일반(인)’이 각각 25회(5.0%)로 약간씩 있었다. 특히 ‘일반(인)’이라는 용어는 주로 관료를 대상으로 사용하였다. ‘인민’(22회, 4.4%)과 ‘민(백성)’(20회, 4.0%)이라는 말은 관료들 대상으로만 사용하였고, 이들 용어보다 출현 빈도는 다소 떨어지지만, ‘일본국민’과 ‘관민일반’ 각각 5회(1.0%)와 인구 개념의 ‘2천만’ 또는 ‘1억’ 같은 용어도(6회, 1.2%) 관료들에 대해서만 사용하고 있다.

<표 4> 유고·혼시 공포 대상별 국민 개념 빈도표

국민 개념		국 민		관 료		모두(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국민	국민	27	14.4	64	12.9	91	13.3
	동포	8	4.3	25	5.0	33	4.8
	인민	-	-	22	4.4	22	3.2
	우리(들)국민	3	1.6	17	3.4	20	2.9
	전국민	7	3.7	5	1.0	12	1.8
	민족	3	1.6	7	1.4	10	1.5
	일반인민	2	1.1	7	1.4	9	1.3
	주민	1	0.5	7	1.4	8	1.2
	일반국민	1	0.5	4	0.8	5	0.7
	일본국민	-	-	5	1.0	5	0.7
	그 밖에	2	1.1	2	0.4	4	0.6
모 두		54	28.9	165	33.3	219	32.1

민중	민중	15	8.0	61	12.3	76	11.1
	일반(인)	2	1.1	25	5.0	27	4.0
	일반민중	7	3.7	17	3.4	24	3.5
	양민	3	1.6	11	2.2	14	2.0
	공중	2	1.1	9	1.8	11	1.6
	만민	3	1.6	4	0.8	7	1.0
	대중	-	-	5	1.0	5	0.7
	서민	4	2.1	1	0.2	5	0.7
	그 밖에	2	1.1	6	1.2	8	1.2
모 두	38	20.3	139	28.0	177	25.9	
관민	관민	21	11.2	47	9.5	68	10.0
	강내관민	19	10.2	6	1.2	25	3.7
	민(백성)	-	-	20	4.0	20	2.9
	관민일반	-	-	5	1.0	5	0.7
	조야(일반)	2	1.1	3	0.6	5	0.7
	그 밖에	5	2.7	7	1.4	12	1.8
모 두	47	25.1	88	17.7	135	19.8	
신민	황국신민	4	2.1	14	2.8	18	2.6
	상하	5	2.7	10	2.0	15	2.2
	신민	6	3.2	7	1.4	13	1.9
	총후국민	4	2.1	9	1.8	13	1.9
	제국신민	4	2.1	5	1.0	9	1.3
	황민	2	1.1	4	0.8	6	0.9
	그 밖에	3	1.6	6	1.2	9	1.3
모 두	28	15.0	55	11.1	83	12.2	
기타 전근대적 개념	중서	5	2.7	11	2.2	16	2.3
	사민(斯民)	3	1.6	4	0.8	7	1.0
	1억/2천3백만	-	-	6	1.2	6	0.9
	역조(億兆)	2	1.1	3	0.6	5	0.7
	그 밖에	10	5.3	25	5.0	35	5.1
	모 두	20	10.7	49	9.9	69	10.1
모 두	187	27.4	496	72.6	683	100.0	

비고: 복수계산, 각 칸의 비율은 각 시기별 모두에 대한 백분율임.

요컨대 일제시대 식민통치 당국은 각 시기별로 출현 비중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국민을 지칭하는 말로 일본제국의 공식적인 용어인 '신민'보다는 '국민'과 '민중', '관민'을 주로 사용했다. 국민을 지칭하는 공식적인 용어는 일제시대 내내 '신민'이었으나,²¹⁾ 일제 후기가 되면 '국민총동원운동'(1940), '국민학교제도'(1941), '국

21) 우선 「대일본제국헌법」 제2장에서 '신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법령 안에서는 '일본신

민개로운동' 등 '국민'이라는 용어도 널리 쓰였다. 국가 용어와는 달리 대체로 전 근대적 국민 개념에 비해 근대적 국민 개념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전체적으로는 '국민'이라는 용어로 수렴하면서도, 65가지나 되는 다양한 용어를 혼용한데서 알 수 있듯이, 일제 식민통치 당국도 국가 개념과 마찬가지로 국민 개념의 사용과 관련하여서도 과도기적 혼란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본정부의 고위관리도 예외는 아니어서, 수상이 발포한 내각고유와 내각훈시에서도 국민에 해당하는 용어로서 '국민'을 비롯하여 '관민', '신민', '동포', '민중', '공중', '중서', '조야', '1억' 등을 혼용하고 있다.²²⁾ '인민'이라는 용어는 제1기에만 주로 사용되었고, 민족 감정을 촉발할 수 있는 '민족'이라는 용어는 별로 쓰지 않았다. 그 대신 제2기에는 '민중'이라는 말을 주로 사용하였고, 제3기에는 '국민'과 '관민'이라는 용어를 주로 쓰면서, 말기가 되면 고도 국방국가 건설에 따라 '천황'에 대한 절대복종을 강조하는 '황국신민'을 비롯하여, '1억 국민' 같은 인구 개념도 등장한다. 이처럼 같은 '국민'이라는 기표 안에서도 통치의 목적에 따라 그 기의가 상당히 다른 용어들을 적절히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곧 제1기에는 민족감정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대체로 중립적인 '인민'과 '국민'으로 부르다가, 3·1운동이라는 민중운동을 당하자 한국 민중을 달래고 관민의 일치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민중'과 '관민'을 강조하였다. 다시 전쟁의 확대로 고도 국방국가 체제가 형성되자 소위 '천황 폐하' 아래 1억 국민의 절대복종을 끌어내기 위해 '국민'과 '관민'으로 변화하고 있다. 국민 용어의 사용 대상별로 보면, 국민에 대해서는 '관민'과 '국민'을 주로 사용했고, 관료에 대해서는 '국민'과 '민중'을 주로 사용했다.

이처럼 일제시대 국민 개념의 사용과 관련해서는 기표가 너무 난립하여 통일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다만 국가 용어는 통치목적에 따라 일본국가 또는 한반

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朝鮮總督府, 1916: 제1집, 1). 각 법령의 내용에서도 '제국신민', '일본신민', '일본인' 등의 표현을 널리 썼다. 그 예로는 「조선은행법」(법률 제48호, 1911) 제5조 "제국신민"(朝鮮總督府, 1916: 제16집, 12), 「선박법」(법률 제46호, 1899) 제1조 "일본신민"(朝鮮總督府, 1916: 제17집, 140), 「동양척식주식회사법」(법률 제63호, 1908) 제9조 "일본인"(朝鮮總督府, 1916: 제16집, 125) 등이 있다. 그리고 일제 말기에 공포한 「국가총동원법」(법률 제55호, 1938) 제4조와 제21조 등에서는 "제국신민"을 쓰고 있다(山口吸一, 1939: 1511~1513).

22) 예를 들면 '관동대진제 관련 내각고유'(1923년 9월16일, 관보 20일 호외); '국민정신 진작에 관한 내각고유'(1923년 11월11일, 동 16일 호외); '시국에 관한 관리준수요항'(내각훈시, 1939년 2월24일, 동 3월1일); '시국 관련 내각훈시'(1944년 10월23일, 동 11월2일) 등이 있다.

도만을 의미하는 '이 땅'의 구분이 비교적 분명했으나, 국민 용어는 바로 눈앞에 있는 통치의 대상인 '조선 민중'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러면서도 국민 개념 안에는 '천황'과 나머지 국민, 내지인과 외지인의 구분과 같은 분명한 구획이 내재하고 있다.

IV. 일제시대 국민 개념의 개념사적 분석

1. 국가와 국민, 민족

오늘날 국민이란 동일한 국적을 보유한 사람들의 집합으로 시민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 2002: 182). 국민 개념은 근대 국민국가와 함께 부상한 것으로써, 근대 국민국가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근대 '국민'의 창출이 그 전제가 된다. 근대 '국민' 개념의 형성과 근대 '국민' 창출의 관계를 본다면, “애당초 근대 이행기의 민중이 근대지향적이라는 논의는 세계사를 통해 실증할 수 없는 역사인식이다”(趙景達, 1998, 박맹수 역, 2008: 26). 일본에서 국민이란 관념은 Bluntschli의 국법학이 소개되면서 메이지 초기에 수용된 개념이기 때문에(山田央子, 1991/1992 참조), 메이지유신 당시 일본에서 명확히 '국민'이 형성될 수는 없었다. 그 직전인 1853년에 미국의 페리함대가 내항했을 때, 무사들은 전쟁발생의 가능성을 고려해 국가방위의 방책에 부심했으나, 서민은 이를 일상생활의 무료함을 달래줄 구경거리로 여겼고, 그들의 일부는 서양과 개항을 할 절호의 상업기회로 여겼다. 따라서 당시의 서민에게는 국가와 운명공동체라는 의식은 없었다(三谷博, 2001: 219~220). 그런 까닭에 미래에 형성되어야 할 국민상을 제시한 후쿠자와(福澤有吉, 1880/2009: 42)도 당시로서는 “일본에는 오직 정부 있으되, 아직 국민은 없다”고 실토할 수밖에 없었다.

같은 맥락에서 구한말 이래 한국의 민중운동을 보더라도 근대적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민중으로 하여금 정신적 내면에서 직접 행동으로 나아가게 하는 데는 토속신앙이나 종교, 또는 반근대적 논리 등이 종종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趙景達, 2002, 허영란 역, 2009: 28). 원래 민중

개념은 프랑스혁명과 19세기의 제혁명, 노동운동의 고양 등을 배경으로 성립했으며(吉原功, 1994: 622), 역사적으로는 늘 피치자로서 일반적인 의식은 보수적이나 혁명의 시기에는 사회변혁의 주체가 되기도 한다(大學教育社, 1994: 990). 구한말의 민중운동도 1860년대 이후 크게 고조되는데, 이 과정에서 유생(士)들이 담당했던 역할은 매우 크다. 특히 동학(1860)을 창시한 최제우(崔濟愚)는 몰락양반으로서, 민중을 총체적으로 士로 파악하여 조선 특유의 평등사상인 동시에 참여한 변혁논리를 제시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 동학은 결코 민중을 변혁주체로 여기지는 않았다”(趙景達, 2002, 허영란 역, 2009: 42~43, 48~49). 그 뒤 대한제국기에 士 의식이 확산되고, 그로 인해 민중운동이 활발해지자 정부는 필사적으로 이를 탄압하고, 황제 독재체제로 민중을 억눌렀다. 을사조약 이후에는 士 의식으로 무장한 의병이 궤기했지만, 결국 일본의 군사력이 가세해 士 집단을 몰아냄으로써 민중의 士 의식은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趙景達, 2002, 허영란 역, 2009: 203). 이처럼 士 의식의 확산을 통해 근대 ‘국민상’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대한제국은 국권을 상실한다.

이렇게 볼 때 미래에 ‘있을 법한 국민’의 개념은 유럽의 제3신분 내지 부르주아, 조선의 士, 일본의 군신(群臣=유신 관료) 등 중간 개념(계급)에서 태동한 셈이다(飛鳥井雅道, 1984: 26~27, 52~53). 따라서 서서히 싹트던 민족의식과 이 중간 개념의 결합이 근대 국가와 국민을 형성하는 매개체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한국과 일본에서 근대 ‘국가’와 ‘국민’ 개념의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J. K. Bluntschli의 「일반국법학」²³⁾에서 국가와 국민, 민족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하자. 그에 따르면 국가(Staat)란 많은 사람들이 모여 국민성(Völkerschaft)을 갖춘 집단으로 존재하고, 일정한 국토를 갖고, 국민이 일치단결하고, 거기에 치자와 피치자 또는 군주와 신하의 구별이 있고, 마지막으로 국가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가 기계의 일부가 아니라, 국가의 기관으로서 신체를 구성하는 각 부분과 같이 각각이 임무를 수행할 것(加藤弘之 역, 1879: (卷之一)1~18; Ritchie trans., 1885:

23) 이 책의 제1판은 *Allgemeines Staatsrecht geschichtlich begründet*(1851~1852)로 뮌헨에서 출간된 이래, 이를 대폭 수정한 제2판은 「일반국법학: 상하」(1857) 2권으로, 1863년에 제3판(개정판), 1868년에 제4판을 출간했다. 그 뒤 기존의 「일반국법학」을 제1권 「일반국가론」, 제2권 「일반국법학」으로 나누고, 다시 제3권 「정치학」을 추가해, 3권으로 된 「근대국가론」(1875~76)으로 체계를 바꾸었다(山田央子, 1991: 138).

15~23; Bluntschli, 1874: 10~15; 平田東助·平塚定二郎 역, 1889: 14~23; 吾妻兵治 역, 1899: 5~8),²⁴⁾ 다시 말해 ‘유기적 본질’(ein organisches Wesen)을²⁵⁾ 갖는 것이다(山田 央子, 1991: 144).

다음으로 국민(Volk)이란 “국가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국가로 통합되어 국가 안에 조직된 공동체로서, 국가의 창설이 있고서야 비로소 성립한다”고 하여 (Bluntschli, 1875/1886: 97; Matheson trans., 1885: 86), Bluntschli는 국민에 대해 국가를 우선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적 개념인 국민에 대해, 민족(Nation)이란 종교, 언어, 전통을 그 성립요인으로 하는 문화적 개념으로서, 민족은 국가 안에서 국민이

24) 인용한 부분에서 국민에 해당하는 용어로 가토는 주로 ‘국민’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억조’라는 용어도 쓰고 있다. 平田東助·平塚定二郎도 ‘국민’을 주로 쓰면서 ‘인민’, ‘국민일반’을 함께 썼다. 吾妻兵治의 한역본에서는 ‘민인’을 주로 쓰면서 ‘민’과 ‘국민’을 함께 썼다. D. G. Ritchie et al.의 영역본에서는 ‘nation’을 쓰고 있다. 이들 각각의 번역본을 비교하면, 가토의 번역본은 「일반국법학」 제4판이고, 영역본은 「근대국가론」의 제1권으로 후자가 약간 더 자세하지만 전반적인 내용은 유사하고, 다른 2권은 Bluntschli의 「지식인을 위한 독일국가론」(1874)을 번역했는데, 가토의 1-2권과 후자의 1-3권은 그 편제가 약간 다르지만 전반적인 내용은 유사한데, 번역본 간에는 상당한 뉘앙스 차이가 있고, 주요 용어를 번역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유목민(horde)은 아직 민족이 아니다”에서 민족(Völkerschaft)의 번역어로 가토는 ‘國民族’이라는 특이한 용어를(2), 영역본에서는 ‘tribe’(16)로 번역했다. 또한 “민족(Völkerschaft)이나 국민(Volk)은 가족이나 종족을 하나의 정치적인 공동체(Gemeinwesen)로 결합시킨다”(Bluntschli, 1874: 11)를, 平田東助·平塚定二郎(15)은 “허다한 가족과 부족을 결합하여 정치를 공동으로 하고 한 국민을 창성한다”로, 吾妻兵治(5)는 “幾多한 가족과 부족을 서로 결합해 그 정치를 공동으로 하고, 이로써 一國을 구성한다”로 번역하고 있어, 국가형성 과정에서 민족과 국민의 주체적인 역할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이들 번역본 중 가토의 번역본은 도쿄대학 경제학부자료실 소장본을 필자가 직접 방문하여 카메라로 촬영한 것이고, 平田東助·平塚定二郎의 번역본은 일본 국회도서관 > 근대 디지털 라이브러리(kindan.ndl.go.jp)에서 다운로드 받았다. *Deutsche Statslehre für Gebildete*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다운로드 받았다.

25) 국가의 유기적 본질과 관련해 Bluntschli는 “국가는 道義를 갖는 유기체이므로 결코 단지 性理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 법 역시 결코 性理論을 집록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한다. 가토는 번역에서 유기체 밑에 “(按)유기체란 각 부의 기관이 있는 몸체를 말하는 것으로써 곧 생명체를 말한다. 국가에 정부와 입법부, 법원 등처럼 각 부와 局이 있는 것은 역시 생명체에 각 부 기관이 있는 것과 같다. 따라서 국가를 생명체에 비유한다”고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明治文化研究會, 1971: 23). 또한 Bluntschli는 국가유기체와 주권의 관계에 대해서는 “국가는 유기체로서 주권이 유일하지 않으면 그 안녕을 보장할 수 없고, 만일 주권이 분열하면 국가가 필연적으로 마비되고 붕괴하기에 이른다. 따라서 주권이라는 것은 항상 유일하지 않으면 국가가 오랫동안 건전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明治文化研究會, 1971: 31). 이 때문에 그는 인민주권론이 아닌 군주주권론을 합리화 한다.

될 때 법적 통일성(eine Rechtsperson)을 갖는다고 하여(Bluntschli, 1875/1886: 92~96; Matheson trans., 1885: 83~85), 민족에 대해 국민을 우선시 하였다.²⁶⁾ 이러한 성립과정의 차이로 말미암아, 국민은 법공동체를 형성하고 국가운영에 정치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민족과 큰 차이가 있다. 이때 국민정신(Volksgeist)과 국민의지(Volkswille)는 국민을 형성하는 각 개인의 정신과 의지를 단순히 합한 것이 아니라, 통일적인 공통정신(Gemeingeist)과 국가의지(Staatwille)라고 함으로써(Bluntschli, 1875/1886: 97~98; Matheson trans., 1885: 87), 이 ‘공통의지’야말로 그의 유기체적 국가론의 중핵을 이루고, 또 그 유무가 국민과 민족의 결정적인 차이를 이룬다(山田 央子, 1991: 145~149 참조). 국가와 국민의 이러한 유기적 관계로 말미암아 “국가가 없이는 국민이 없고, 국민이 없는 진정한 국가는 있을 수 없다”(Bluntschli, 1874: 11).²⁷⁾ 이러한 의미에서 사실 그가 주장하는 국가와 국민의 유기적 관계란 ‘이념형’(ideal type)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에 가까울수록 전체주의화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번에는 Bluntschli의 「일반국법학」을 최초로 일본에 번역 소개한 가토 히로유키의²⁸⁾ ‘국민’ 관념을 보기로 하자. 여기서는 Bluntschli의 원저와 가토의 번역서를

26) 그런데 그는 당초 「일반국법학」 제1판 제2장 3절에서 Volk를 Naturvolk(자연인)로, Nation을 Staatvolk(국가국민)로 정의했으나, 제2판에서는 이 둘의 정의가 180도 바뀐다. 곧 그는 새로 붙인 주석에서 일찍이 붙어 용법에 따라 “Naturvolk=Volk(people), Staatvolk=Nation”으로 저술했으나, 어원을 보면 “natio(nasci)는 탄생(Geburt)·인종(Rasse)”을 가리키고, “Volk(populus)는 도시(Stadt)·국가(Staat)”를 시사한다고 하여, 다시 Nation=Naturvolk, Volk=Staatvolk로 정의한다. 다음, Nation은 불어와 영어의 people과 people, Volk는 nation으로 정의하고 있다. 두 개념에 대한 이러한 구분은 3판 이후 더 분명해진다(山田 央子, 1991: 145~146 참조).

27) 이 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오늘날 문명한 국가는 거기에 소속된 인간의 총체(Gesamtheit)가 하나의 통일된 전체성(Gesamtwesen) 안에 통합된 국민국가(Volksstaten)이다. 그것은 스스로 규정되고 그 자신의 의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의 공공적 정신(der Gemeingeist des Volkes)은 국가의 영혼으로 살아있고, 국가의 헌법 가운데서 하나의 몸체를 얻게 된다. 그들의 관직과 관청, 의회는 국민의 공동생활을 육성하는 부분으로서 봉사하기” 때문이다(Bluntschli, 1874: 11).

28) 당시 가토는 大學大丞이 되어 사실상 메이지정부의 고등교육기관의 하나인 大學南校(審書調所)의 후신으로 훗날 도쿄대학의 전신)의 최고책임자였고(1869), 그 다음해에는 ‘메이지 천황’의 시강직(侍講職)에 올랐다. 이에 가토는 “메이지 천황에 대한 제왕학으로서 進講用 텍스트”로 이 책의 필요한 부분만 번역했으며(木村毅, 1971: 11), 가토에 따르면 ‘메이지 천황’은 오로지 이 책을 통해 헌법과 삼권분립, 시정촌자치제의 대의를 획득(會得)했으므로, 이 책이 제왕학으로서 수행한 역할은 중대하다고 하겠다(木村毅, 1971: 12).

서로 대조하면서 분석한 山田央子(1992)의 연구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앞에서 보았듯이 Bluntschli는 국민을 국가를 형성하는 주체로 보고, '국민의 통일적 의사'를 중핵으로 근대 국민국가의 성립을 과제로 삼은데 반해, 사실 가토의 번역본에서는 그 의미가 상당히 모호하다. 국가와 국민, 민족과 관련된 주요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1. 민중(민족-필자주)은 대개 허다한 민중이 함께 같은 뜻의 開化를 얻음으로써 생긴다. 단, 국민은 허다한 민중이 함께 한 개의 국가를 이룸으로써 생긴다. 민중은 국가의 성립에 의해 비로소 국민이 된다. 곧 국가사회의 성립에 의해 비로소 국민의 합동이 생긴다. (중략)
2. 국민은 오랫동안 동거하며 서로 生養하면, 이로 말미암아 마침내 일종의 性情과 風俗을 만들기에 이르고, 대개 이 성정과 풍속은 그 각인의 성정풍속과는 전혀 상이하고, 특히 국민 다중의 결합에 의해 점차 생기는 바의 것이다. (중략)
3. 각 민중은 언어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 합동의 가능성이 있는 고로 전혀 자연적으로 생겨난 하나의 活人(Person)이라 불러야지, 결코 법제상으로 생긴 하나의 活인이라 불러서는 안 된다. 그런 고로 민중사회는 결코 법제상의 사회는 아니다. 곧 민중은 결코 국법상의 活인은 아니다. 그런데 국민은 오로지 국가의 힘에 의해 비로소 一體가 되고, 아울러 국법상의 活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Bluntschli, 1875/1868: 84~85; 加藤弘之 역, 1879: 卷之二, 16~17, 문장번호는 필자).

비록 발췌번역이지만 가토는 비교적 원저를 충실히 번역한 흔적이 엿보이는데,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2이다. 일단 2에서 국민정신(Volksggeist)과 국민성(Volkscharakter)을 성정과 풍속으로 번역함으로써 그 의미가 상당히 달라졌다. 나아가 2에서 이 국민정신과 국민성은 국민 개인의 정신과 품성을 단지 산술적으로 합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무엇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가토로서는 국민과 일체로서 상정된 국가 관념은 이해할 수도 수용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는 국가(Volk)를 국민국가(Volkstaat)가 아닌, 오히려 기구로서 'Staat'로 전환시켜서 이해하는 경향이 있었다. 가토의 번역 전체를 통해 볼 때, 그는 국민의 유기적 결합으로서 국가보다는 오히려 통치기구로서 국가를²⁹⁾ 강조하고 있다(山田央子,

29) 이는 卷之三 국가의 성립과 몰락에서 국가의 역할을 번역한 부분, 곧 "Der Staat ist die

1992: 248~249). 결국 가토는 기계론적 국가관으로 전락함으로써, 유기체론을 제기한 Bluntschli와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山田央子, 1992: 250). 가토의 「일반국법학」의 번역 순서를 보더라도, 원서를 순서대로 번역한 것이 아니라 소위 “오늘날 정무에 절요”한 것부터 번역했는데,³⁰⁾ 1872년의 초판에서는 제2권 ‘국민과 영토’가 빠져 있었다는 데서 그의 국민 관념을 짐작할 수 있겠다.³¹⁾ 특히 가토는 Volk를 Unterthan과 마찬가지로 ‘신민’으로 번역한 경우도 있어, 그가 Volk를 ‘신하’적인 의미로 이해한 것은 분명하다고 하겠다(山田央子, 1992: 233). 따라서 그는 국가나 국체에 비해 국민은 부차적인 문제로 취급한 셈이다.

그러면 가토의 이러한 사상적 한계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원래 가난한 중급 무사 출신의 청년 가토가 접한 천부인권론과 만민평등 사상은 그를 사로잡았다. 이에 그는 개국과 관련해서는 막부에 동조하고, 막번체제의 변혁과 관련해서는 ‘존황양이파’(尊皇攘夷派)와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장래 이룩해야 할 국가상과 관련해서는 이들과 전혀 다른 서구의 근대국가상을 상상하고 있었다(安世舟, 1976: 116). 정치체제와 관련해서는 공화정치를 선호하면서도, “인문이 덜 깨이고, 우매한 백성이 많은 나라” 일본에서는 일시적으로 절대주의체제(君主專治-가토)를 채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安世舟, 1976: 118~119). 훗날 그는 Bluntschli의 사상에 접하고,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2세를 메이지 신정부의 모델로 간주하면서 천부인권

Erfüllung der Gesamtordnung und die Organisation zur Vervollkommnung des Gesamtlebens in allen öffentlichen Dingen”(Bluntschli, 1875/1886: 345)을, 가토(1879: 卷之三, 83)는 “**국가는** 곧 인간이 서로 협동일치를 도모함으로써 一大全體를 이루는 要具라고 인식해야 한다”고 뚱뚱그러서 번역했다(강조는 필자). 여기서 ‘要具’란 ‘필요한 도구’를 의미한다.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국가는 공공질서의 실현이고, 모든 공적인 사항과 관련해 공동생활을 완전하게 하기 위한 조직이다”가 된다. 영역본은 “The State is the fulfilment of common order, and the organisation for the perfection of common life in all public matters”이다(Ritchie trans., 1885: 283).

30) 이는 「國法汎論」 초판 卷之六 上의 譯者識에서 밝히고 있다. 「國法汎論」 초판은 明治文化研究會(1971: 29)에서 해제를 붙여 「明治文化全集: 補卷(2)」로 간행되었다.

31) 가토는 1872~1874년에 간행된 「國法汎論」 초판에서는 국법학의 총론에 해당하는 서론(首卷 上帙 제1책)에 이어, 6권(주권과 국가원수), 제7권(국가의 직무와 고유의 통치), 8권(사법에 대해), 9권(국가의 문화보호와 육성)(下帙 1-10책)을 번역 출간하였다. 그리고 1876~1879년에 다시 앞부분으로 돌아가 1권(국가의 개념), 2권(국민과 영토), 3권(국가의 성립과 몰락에 대해), 4권(국가형성)의 일부(上帙 제2-10책)를 번역하였다(山田央子, 1992: 235~236). 가토가 번역한 Bluntschli의 원서는 제3판과 제4판이었는데, 이 두 판의 내용은 별 차이가 없었다(安世舟, 1976: 128~129 각주 2) 참조.

론을 포기하는 사상적 전향을 단행한다(飛鳥井雅道, 1984: 9).³²⁾ 그 이유는 그가 당시 관직에 있었던 점도 작용했겠지만, 그보다는 Bluntschli의 사상, 곧 그가 당시 독일의 정치현실을 감안하여 국가유기체론을 주장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³³⁾ 당시 일본의 정치현실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타협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가토의 번역을 통해 Bluntschli(1810~1881)의 사상은 유럽을 넘어³⁴⁾ 전 일본의 관료사회와 지식인 사회에 침투한다. 가토가 굳이 이 책을 번역한 이유는

32) 이 과정에서 가토는 1882년에 자신의 책 「國體新論」(1874)이 천황제국가에 방해가 된다고 비판한 자, 이를 포함해 「立憲政體略」(1868)과 「眞政大意」(1870) 등 3권에 대해 절판을 선언하고(安世舟, 1976: 131), 「郵便報知新聞」에 ‘절판’ 광고까지 냈다(飛鳥井雅道, 1984: 9). 막말에 이미 「隣草」(미출간)에서 만민평등을 바탕으로 한 근대국가의 이념형을 형성하고 있던 가토는 「立憲政體略」을 통해 근대국가상을 확립했다(安世舟, 1976: 113~119 참조). 「眞政大意」에서는 ‘공명정대한 정치’ 곧 근대국가의 조직원리와 그 운용의 준칙을 설파했고, 「國體新論」에서는 이를 좀 더 체계화하였다(安世舟, 1976: 131). 예를 들어 「國體新論」은 총론에서 “천하의 국토가 전부 한 군주의 소유물이고, 그 안에 사는 역조의 인민은 모두 한 군주의 臣僕”인 나라는 “야비하고 천박한(野鄙陋劣) 풍속이라 할 수밖에 없고”, “군주도 사람이고 인민도 사람이어서 결코 다른 부류가 아니다”고 주장한다(2). 또 제2장에서는 “국가의 主眼은 인민으로 하여 인민을 위해 군주가 있고 정부가 있는 이유”를 논하고(9-10), 제3장에서는 “천하의 국토는 한 군주의 사유가 아니라, 오직 이를 관리하는 권리가 특히 한 군주에게 있는 이유”를 논하는 등(10-13), 당시 일본에서는 매우 과격한 사상을 토로하였다.

33) 보수 자유주의적인 Bluntschli의 정치사상은 당시 독일 부르주아의 정치적 태도를 대변하고 있었다. 곧 당시의 부르주아는 Bluntschli가 만든 슬로건대로 ‘자유에 의한 통일’을 기대했으나, 결국 그들은 왕권과 그 군사력에 기대어 전쟁을 거쳐 역사적 과제인 통일된 독일제국(1871)을 실현했다. 따라서 독일제국에서는 왕권=국가권력에 대한 의회의 통제는 물 건너갔지만, 그래도 보통선거를 통해 제국의회를 구성함으로써 외견상 입헌체제는 도입되었다. 또한 사회경제적으로는 위로부터의 개혁이 수행되어 자본주의의 발전에 필요한 근대화가 실현되고, 근대국가로의 전환이 진행됨에 따라, 인민주권의 확립은 포기하고, 또 이를 주장하는 급진적인 정당에 대항하기 위해, 오히려 이들은 왕권과 동맹을 맺는다. 이 과정에서 인민주권론을 부정함과 동시에 중세적 국가관계도 청산하면서, 인민에 대한 국가권력의 우위성을 보장하는 근대적 이론이 필요해짐에 따라 등장한 이론이 바로 국가유기체설이었다(安世舟, 1976: 123~125). 새로운 국가상을 구상하고 있던 가토에게 독일의 이러한 정치현실은 큰 참고가 되었음에 틀림없다.

34) 그는 스위스와 독일 두 나라에서 대학교수와 정치인을 역임하여 학계와 정계에 큰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일반국법학」의 최종판인 「근대국가론」(*Lehre vom modernen Staat*, 1875-76)은 불어, 영어, 러시아어, 네덜란드어, 이탈리아어, 그리스어, 헝가리어로 번역되어, 그의 이론이 구미제국에서 널리 수용되었다(山田夾子, 1991: 129). 더욱이 프로이센-오스트리아전쟁(1866) 이후에는 그 관심이 국내정치에서 국제관계로 바뀌면서, 국제법의 체계화를 시도하여 국제적으로 활동한 결과, 독일을 대표하는 국가학자, 국제법학자로서 세계적으로 그 이름이 알려졌다(安世舟, 1976: 121~123).

그때까지 일본에 서구 각국의 제도와 율령을 소개하는 책들은 많아도, 문명세계의 법전을 전반적으로 논의한 일반론(通論)이 없었는데, 이 책이 그의 이러한 요구에 부합했다고 「국법범론」의 머리말(小引)에서 밝히고 있다(明治文化研究會, 1971: 5). 가토를 비롯하여 「일반국법학」이 일본에서 여러 번 번역 또는 부분번역되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모음에 따라, 그는 근대일본에서 가장 높은 관심과 광범한 독자를 획득한 19세기 서구 사상가의 한 사람이 되었다(山田央子, 1991: 129). 특히 「근대국가론」의 제1권 「일반국가론」이 *The Theory of the State*(1885)로 영역되어 영미의 대학에서 교과서로 사용되었고, 일본에서도 도쿄대학과 와세다(早稻田)대학, 게이오의숙(慶應義塾) 등 주요 대학에서 모두 교과서로 채택하였다(木村毅, 1971: 4). 무엇보다 “「국법범론」이 일본에 미친 영향은 그의 자유주의적인 입헌사상의 발달보다도, 오히려 국가 개념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학의 형성에 있고, 관료사상에 학문적인 근거를 제공한 점에 있다”(蠟山政道, 1949: 65). 나아가 메이지헌법의 제정 과정에서는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통해 일부 영향을 미치게 된다(木村毅, 1971: 19~20).

한편 Bluntschli의 이름은 한자로 步倫, 伯倫知里 또는 布龍鐵 등으로 표기되며, 그의 국법학과 국제법 이론(특히 「공법회통」)은 한국과 중국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김효전 역, 2003: 3, 5). 그가 동아시아에서 각광을 받은 이유는 그의 국법학이 특정한 국가의 실정 국법을 논한 것이 아니라, 가토도 말했듯이 ‘일반’ 국법학의 교과서적인 서술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당시 근대 국가를 지향하는 중국과 일본의 실정에 부합하였다고 볼 수 있다(김효전 역, 2003: 5). 그의 유기체적 국가론은 독일 Karl Rathgen의 책을 일본어로 번역한 것을 유길준이 국한문 혼용체로 중역한 「정치학」에서도 인용되고 있다(김학준, 2003: 62~64). 특히 그의 「국가학」은 한문으로 번역되어 「만세보」(1906년 9월18일~11월22일)에 연재되었다. 또한 안종화가 이 책의 일부를 국한문체로 번역하여 「국가학강령」(1907)으로 출간했고, 정인호가 중국인 양계초의 번역을³⁵⁾ 중역하여 「국가사상학」(1908)으로 출간했다(김효전, 2000: 122~133; 김효전 역, 2003: 1~3, 11). 그의 국가학은 가토의 「국법범론」을 통해 조선과 중국에 널리 소개되었고(김효전, 2000: 130), 무엇보다 양계초의 여러

35) 일본 망명시절 양계초는 平田東助·平塚定二郎이 공역한 「국가론」(1889)을 통해서 Bluntschli의 사상에 접한다(山田央子, 1992: 272).

저작이 번역 소개됨으로써, 국내 지식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김효전 역, 2003: 12~13). 이에 따라 「대한매일신보」(1908)의 논설에 소개된 민족과 국민의 구별을 보면,

“민족이란 단지 동일한 혈통에 속하고, 동일한 토지에 살며, 동일한 역사를 갖고, 동일한 종교를 가지며,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면, 이를 동일한 민족이라 하거니와 국민 두 자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중략) 국민이란 것은 그 혈통, 역사, 거주, 종교, 언어의 동일한 외에, 또 반드시 동일한 정신을 갖고, 동일한 이해를 느끼며, 동일한 행동을 하여, 그 내부의 조직이 일신의 근골과 相同하며, 대외의 정신이 壹營의 군대와 상동하여야 이를 국민이라 운하나니.”

라고 하여, Bluntschli의 국민과 민족의 구분과 마찬가지로 유기체론에 근거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과 일본을 통해 서구 근대국가 사상이 국내에 유입되었으나, 대체로 일본인의 선전과 메이지헌법의 영향을 받아, 구한말의 지식인들은 신민을 통치권의 단순한 객체로 파악하여, 신민의 권리보다는 복종의 의무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김효전, 1991: 279~281). 따라서 당시 지식인들의 국민 개념에 대한 논의는 철저하지 못했고, 다만 국민을 국가를 강화하기 위한 동원의 대상으로만 파악하였다(김동택, 2002: 379~380). 게다가 실질적인 국민 담론은 대한제국 붕괴 후인 식민지시기에 들어서야 ‘국민’이 아닌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변형되어 출현하였다. 왜냐하면 일제 식민지화에 의해 국민의 주체적 형성과정은 일단 좌절되었고, 국가가 붕괴된 상황에서 한국사회를 유지시키고 통합시키는 담론의 주제는 국민이 아니라 민족이었기 때문이다(김동택, 2002: 381). 특히 3·1운동을 계기로 한국의 민족주의는 ‘우리’ 의식의 확산을 가져왔고, 근대의식과 민족의식이 결합되면서 강렬한 배일 민족의식과 저항으로 연결되었다(박명림, 1996: 50~51). 그런데 일제시대 한민족의 민족의식은 ‘우리’ 의식을 형성하고, 일본민족에 대해 대항의식을 형성하는 데는 유용했을지 몰라도, 3·1운동 당시 조선 민중은 윌슨 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를 오로지 한민족의 자율적인 의지와 노력으로 획득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에서,³⁶⁾ 근대적인 민족 개념을 획득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같은 시기 일본국민도 국가로서의 훈련이 부족하고, 국가적 자각

이 부족했음은 물론이다(紀平正美, 1919: 32).

여기서 주목할 점은 Bluntschli의 보수적 자유주의 이론이 동아시아에 번역, 소개되는 과정에서, 근대국가론에 관한 계몽적 역할뿐 아니라 애국심에 호소하는 실천적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혁명이론으로 변질되고 둔갑하였다는 사실이다(김효전 역, 2003: 6). 게다가 구한말의 개화지식인들이 접한 Bluntschli의 국가사상은 한글로 번역된 것이 아니라 주로 중국이나 일본에서 한역 또는 일역된 것으로서 원저와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다. 또한 그들의 이해 수준을 볼 때, 본래의 유기체론이 아닌 가토류의 기계적 유기체론이 구한말의 지식인과 관료사회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게다가 직접 가토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일본의 군주주권제에 근거한 국가와 국민의 관계가 전체 일본 관료사회에 파급되고, 이것이 다시 총독부의 관료정치를 통해 한반도를 지배했다는 사실이다. 더 중요한 점은 거기서 파생된 국가와 국민, 민족 개념이 일제의 한반도 통치는 물론 오늘날 한국의 정치와 행정의 현실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군주주권만 있고 국민주권이 없는 국가, 그런 국가 앞에 국민은 여전히 작은 존재일 수밖에 없었다.

2. 통치의 대상으로서 국민

이러한 맥락에서 메이지헌법에 의해 신민으로 규정된 ‘국민’ 개념이 식민통치의 현실에서 정치,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상하관계에서는 일제시대 내내 국민을 지칭하는 용어에 상관없이, ‘국민’은 ‘천황’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을 의미했고, 그 나머지 국민 안에서도 ‘관’과 ‘민’의 구분이 있었다. 이 구조는 앞서서도 서술했듯이 폐번치현 당시 국내적으로 형성된 “짐(천황)이 朝臣(群)을 통해 ‘억조’를 지배하려던 구도” 곧 ‘神↔짐→群臣→억조’라는 다층 구조가(각주 9) 참조) 메이지14년(1881) 정변 이후 군신과 억조를 합친 새로운 ‘신민’이라는 범주가 창출되면서 형식적으로는 ‘짐→신민’ 구도로 재편되었으나(飛鳥井雅

36) 다음과 같은 일화를 통해 그 일면을 짐작할 수 있다. 곧 파리 강화회의에서 윌슨이 ‘민족자결주의’를 주창하자, 당시 일부 한국 민중은 매일 북한산에 올라가 윌슨이 비행기를 타고 구원하러 오기를 기다렸다고 한다. 또 일설에는 윌슨이 한국의 독립을 돕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북한산으로 올 것이라는 소문이 있어, 한국 민중들이 윌슨에게 북한산의 위치를 알리기 위해 북한산에 올라가 불을 지폈다고 한다(千葉了, 1925, 이충호·홍금자 역, 1993: 50).

道, 1984: 49), 실제로는 '신(官)'과 '민' 사이에 아직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다. 이처럼 치자와 피치자가 사회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곳에서 일체적인 '국민'은 존재하기 어렵다(丸山眞男, 1952, 김석근 역, 1995: 473).

당시에는 소위 일본 '천황'조차 근대 국민 개념이 분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제 강점 당일 발표한 소위 「합방조서」에서 그는 '국민'을 지칭하는 말로 '民', '민중', '중서' 같은 주로 전근대적 용어를 사용했고(「朝鮮總督府官報」, 1910년 8월29일자), 1945년 8월14일에 발표한 「항복조서」에서는 “충량한 너희들 신민”(忠良タル爾臣民, 강조는 필자)으로 끝을 맺고 있다(「매일신보」, 1945). 이 두 문서에서 국가를 지칭하는 용어로는 '제국'을 썼다. 이 '신민'이라는 말은 일본 '천황'이 각종 훈화(訓話)에서도 즐겨 썼던 말로, 관료주의적인 느낌이 들며, 인민대중을 깔보는 듯한 어감이 있다(龜井孝, 1974: 159~160). 특히 “너희들 신민”이라는 표현에서 군주 앞에 국민은 모두 어린아이(적자)와 같은 존재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당시에는 국가 구성원이 모두 평등한 '국민' 개념은 성립할 수 없었고, 신민의 국민적 자각도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 때문에 사실상 식민지의 쌀 수입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일본 농민은, “농촌의 위기는 식민지의 확장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국가주의자들의 선동으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제국주의 노선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역설을 초래했다(Kimura, 1995: 569).

더욱이 1920년대의 다이쇼(大正) 데모크라시를 거치면서 발전하던 정당정치는 1935년에 일어난 '천황기관설' 사건을³⁷⁾ 계기로 그 종말을 고하고, 이 사건의 당사

37) 메이지시대에 일본 헌법에 대한 해석은 호즈미 야쓰카(穗積八東, 1860~1912)의 천황주권설(천황주체설)과 이치키 키도쿠로(一木喜徳郎, 1867~1944)의 국가법인설이 지배적이었다. 둘 다 도쿄제국대학 교수였으며, 호즈미에 따르면 헌법은 “군주의 명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써, 일본에서 주권 또는 통치권은 당연히 '천황'에게 귀속되고, 또한 '천황'의 대권은 '절대무제한'한 것으로 해석하여, “천황은 곧 국가” 그 자체를 의미했다. 이에 반해 이치키는 국가를 하나의 법인으로 보았기 때문에, 군주와 의회는 국가라는 법인을 구성하는 기관이라는 논리가 성립할 수 있다. 이치키에 따르면 “일본은 입헌군주제 국가이므로 천황은 의회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기관이고, 천황도 의회의 제한을 받는다”고 해석했다. 또한 그도 호즈미와 마찬가지로 군주의 절대성을 인정했으나, 군주 개인의 권한의 절대화가 아니라, 군주라는 기관의 권한의 절대화를 의미했다. 이치키의 국가법인설은 美濃部達吉(1873~1948)에 의하여 계승 발전하였다(한상일, 1988: 320~321). 메이지 말기까지 헌법에 대한 해석은 천황주권설이 정통설로 인정받았으나, 다이쇼시대가 되면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사상의 발전과 더불어 미노베의 학설이 점차 지배적 학설로 등장한다(한상일, 1988: 321).

미노베(1912)에 따르면 국가는 하나의 영토 내에서 최고의 권력을 갖는 단체로서 법률상의

자인 미노베 다쓰키치(美濃部達吉) 교수는 귀족원 의원을 사임하고도 테러를 당했으며,³⁸⁾ 일본제국은 국가주의로 나아가면서 짐→신민의 관계를 한층 더 수직적으로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따라 분석대상 자료에서 1935년부터 국가 용어로는 ‘황국’이(한승연, 2010: 18), 국민 용어로는 ‘황국신민’이 처음으로 등장한다.³⁹⁾ 조선총독 중 이들 용어를 처음 사용한 우가키(宇垣一成)는 1937년 1월 조각(組閣)의 대명(大命)을 받지만, 육군의 반대로 실패했고(新潮社辭典編集部, 1991: 253), 그 다음 총독인 미나미(南次郎)와 고이소(小磯國昭)는 둘 다 전후 A급 전범으로 지명되었다(新潮社辭典編集部, 1991: 1663, 684). 이들 총독은 모두 육군대장으로서 일본 군벌의 지도자였으며, 일본정부의 하수인이라기보다 일본 제국주의의 선두에서 파시즘화의 조류를 이끌었던 군부의 수뇌로서, 일본정부의 식민정책을

인격을 갖고(2~17), 통치권은 이 단체적 인격자인 국가에 속하는 권리이며(17~19), 군주국에서 군주는 자신의 권리로서 통치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군주는 국가의 최고기관으로서 국가의 통치권을 총괄하는 것으로써, 통치권을 실현하고 행사하는 최고의 권력은 원래 군주에 속할지라도, 그 권력은 군주가 자기의 권리로서 이를 향유하는 것이 아니고, 권리의 주체는 군주가 아니라 국가에 있다(65~68)는 것이다. 곧 군주는 국가의 최고기관이고, 기관이란 사용인을 의미하므로 군주가 국가의 기관이라는 것은 군주가 인민의 사용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歷史學研究會, 1997: 294).

1911년부터 1913년까지 계속된 미노베와 호즈미의 후계자인 우에스기 신키치(上杉慎吉, 1878~1929)의 천황기관설 논쟁은 미노베의 승리로 끝났고, 이후 20여년간 천황기관설이 정설로 인정받았다(한상일, 1988: 323). 그런데 1920년대 말기부터 자유주의사상이 퇴색하고, 국가주의사상이 대두하면서 천황기관설은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1935년 초부터 국수주의자들에 의해 천황기관설 배격운동이 본격화되었고, 끝내는 정당과 의회, 군부가 가세함에 따라 미노베는 2월25일 귀족원 본회의에서 ‘일산상의 변명’ 연설을 하여 박수갈채를 받게 되는데, 이것이 국가주의자들을 더욱 자극하여(今井清一·高橋正衛, 1963: 361~368), 결국 그해 9월10일 위압에 의해 귀족원 의원을 사임한다. 이 사건을 빌미로 일본에서는 국체명정운동이 일어나고, 결국 군국주의, 국가총동원체제로 나아가게 된다(今井清一·高橋正衛, 1963: 428~450; 한상일, 1988: 324~344 참조).

38) 중의원 의원 에토 겐쿠로(江藤源九郎)가 미노베 박사를 불경죄로 도쿄지검에 고발했으나, 사법당국은 그가 귀족원 의원을 사임한 것으로써 기소유예를 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히구치(樋口敏夫)가 1935년 10월30일 그를 암살하려고 준비하던 중 검거되었다. 또한 다음해 3월11일에는 小田十壯(31세)이 그의 집을 방문해 이야기하던 도중 권총으로 그를 저격하여 오른쪽 무릎에 관통상을 입혔다. 小田은 이 사건으로 인해 1937년 도쿄지방재판소에서 징역3년을 선고받았다(堀幸雄, 1991: 566).

39) 이 ‘황국’과 ‘황국신민’이라는 용어는 1935년 1월11일(관보 1월12일자) 우가키(宇垣一成) 조선총독이 도지사를 대상으로 한 훈시에서 처음 나타난다. 이 훈시를 한 시점은 일본에서 천황기관설 배격운동이 본격화된 것과 거의 일치한다. 여기서 조선총독부의 관료정치는 일본정부의 정치와 직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서 끌어간 인물들이었다(안유립, 1994: 140).

다음으로 내외관계를 보면 일제의 “조선 통치의 궁극적인 목표는 조선인과 일본인의 차별 없는 평등이고, 조선 민중을 일본인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 올려 그 처우를 똑같이 하는 데” 있었다(水田直昌, 1974: 106). 일제가 아무리 한민족의 동화와 내선일체(內鮮一體)를 내세워도, 거기에는 내지인과 외지인이라는 차별의 논리가 깔려 있었다. 식민지에서 이 외지인이라는 말은 ‘열등하고’ 또한 거기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했다. 역으로 내지인이란 말로 일본인은 자신에 대한 우월감과 함께 ‘거기에 속함’을 나타냈다.⁴⁰⁾ 이러한 차별의 논리 속에서도 일제 식민통치당국은 조세와 병역 등 현실적인 통치를 위해 그 ‘국민’의 외연을 확대할 수밖에 없었다. M. Foucault에 따르면 통치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통치하는 것을 의미한다(신충식, 2010: 149). 국부와 국권을 확고히 할 수 있는 토대는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Foucault, 2009: 69). 조선총독부도 이 사람의 외연을 넓히기 위해, 위생관리를 비롯하여 공교육의 확대, 농업과 산업에 대한 행정지도 등 다양한 정책을 시도한다. 1932년에는 한국인으로 하여금 완전한 공민으로서 생활하는 지덕을 키우고, 준법정신과 공존공영의 본뜻을 터득시키기 위해, 중고등학교 과정에 새로 공민과를 설치했다(朝鮮總督府, 1935: 899~900). 총독부로서는 한 사람의 몫을 감당할 수 있는 완전한 국민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제시대를 통해 국민의 외연을 일거에 한민족 전체로 확대시킨 것은 태평양전쟁(1941)이었다. 이 전쟁의 수행을 위해 1944년부터 한국에서도 징병제도를 실시함에 따라, 지난 30년 이상 한국인들이 요구했던 한-일 두 민족 간의 차별 철폐가 전쟁이라는 절대적인 배경을 통해 강력하게 추진되었다(水田直昌, 1974: 100). 종래 일본 국민의 3대 의무, 곧 납세와 징병, 교육 가운데 한국인이 부담한 것은 납세 의무뿐이었다. 국민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권리 주장도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이 그때까지의 논리였다. 이제 조세와 함께 혈세(징병)를 부담하는 한국인에게 일제는 참정권(1945)⁴¹⁾과 국민학교 의무교육(1946년 실시예정)의 혜택

40) Anderson(1991, 윤형숙 역, 2002: 159)이 말하는 원주민 또는 토착인으로서 내지인(inlanders)이라는 말은 일본과 그 식민지의 관계에서는 외지인에 해당한다.

41) 이는 1944년 12월에 발표된 「외지동포에 대한 처우개선」에 따라 다음해 3월25일에 귀족원·중의원의 법령 일부가 개정되고, 조선은 7명의 귀족원 칙선의원과 23명의 중의원 의원을 일본 의회에 보낼 수 있게 되었다. 1945년 4월3일에 귀족원 칙선의원으로서 김명준, 박상준, 박중

을 부여할 수밖에 없었다(水田直昌, 1974: 100~101, 106~107).

그렇다면 그 결과 한국인은 완전한 일본제국의 ‘국민’이 될 수 있었나? 국민의 권리와 의무 면에서는 한국인과 일본인 사이에 어느 정도 구획이 사라졌지만, 이제 식민통치에 협조하지 않는 사람을 ‘비국민’으로 구분함에 따라, 국민 대 비국민이라는 또 다른 구획이 생겨났다. 게다가 “국가의 구성원이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같은 귀속감을 적극적으로 원하거나 적어도 바람직한 것으로 의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丸山眞男, 1952, 김석근 역, 1995: 465). 일본인의 배제에 의한 구획도 있었지만, 한국인이 거기에 소속되기를 거부함으로써 생기는 또 하나의 구획이 있었다.

요컨대 일제시대를 통해 한국인은 일본제국의 외지인 ‘신민’이라는 어색한 존재였고, 일제 말기에 혈세를 지불한 대가로 소위 ‘제국신민’에 편입되었으나, 스스로 국가에 소속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진정한 근대 ‘국민’이 되지 못한 채 광복을 맞이한다. 원래 “국가는 살아있는 존재에게 권력을 행사하며, 따라서 국가의 정치는 생명정치가 되어야 하는데, 국가는 필요한 경우 자기 인구를 도륙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정치(biopolitics)를 거꾸로 하면 죽음정치(thanatopolitics)가 된다”(Foucault, 1982: 416). 그래서 일제의 한국에 대한 식민통치는 “1억 옥쇄(玉碎)”, 죽음의 정치로 끝났고, 한국인은 ‘비국민’으로 광복을 맞이한다. 이러한 식민통치의 경험은 한국인에게 국가에 대한 국민의 거부와 불신이라는 유산을 남긴다. 무엇보다 국민이라는 말과 국민의식의 분리는 광복 이후 한국인이 새로운 정치문화 형성의 주체인 ‘국민’으로 거듭나는데 커다란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

양, 송중헌, 윤치호, 이기용, 한상용 등 7명이 선임되었다(임종국, 1994: 246). 이들은 스즈키(鈴木) 내각 성립 직후 임시의회에 출석했다. 중의원 의원 선출은 다음 총선거일에 제1회 선거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그 전에 광복을 맞음에 따라 시행하지 못했다(水田直昌, 1974: 108). 그 전에 한국인으로 제국의회 중의원 의원을 지낸 사람으로는 박춘금(朴春琴)이 있었다. 그는 제18회 총선거(1932.2.22~1936.1.21)와 제20회 총선거(1937.5.2~1942.4)에서 각각 도쿄 제4구에서 중의원으로 선출되었다(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007: 2347~2348). 그 밖에 귀족원 칙선의원을 역임한 사람으로는 윤덕영(尹德榮, 1939.12.19~1940.10.18)과 이진호(李軫鎬, 1943.10.8) 등이 있었다(각각 동, 2009a: 94; 2009b: 348; 임종국, 1994: 247).

V. 결론과 제언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애초에 전쟁에서 '창을 든 군인'을 의미하던 '국민' 개념은 영토의 확장과 사회적 투쟁에 의해 상부에서 하부로 확대되고, 내부에서 외부로 확대되는 과정을 거쳐 그 외연이 넓어졌고, 마침내 라이프치히전쟁을 계기로 '전체' 인민으로 보편화되었다. 동양문화권의 '국민' 개념도 서양과 마찬가지로 전통적으로 '국민'과 '국인'처럼 내외관계를 구분하고, 또 '인민', '군·신·민'처럼 그 상하관계를 구분하였다. 서구의 근대 '국민' 개념이 도입된 이후 그 명칭은 '인민', '신민', '국민' 등으로 수렴되었으나, 일제 식민치하에서도 태평양전쟁을 계기로 제국신민의 구획이 일거에 철폐되었다. 그러나 일제시대까지도 모두가 평등한 '국민' 개념은 성립되지 않은 채, '국민'은 어디까지나 군주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만을 의미했다. 또한 일본제국은 군주주권제 체제였기 때문에 국민은 주권을 향유할 수 없었고, 이런 상황에서 일체적인 '국민'은 형성될 수 없었다. 다시 말해 근대적 개념으로서 '국민'은 존재했지만, 이를 담보하는 근대 국가의 주권자로서 권리는 누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근대 국가는 알맹이는 빠진 채 국가의 외형만 존재한 셈이다.

구한말에 지구의 반대쪽 끝에 살았던 독일의 국가학자 J. K. Bluntschli의 국가사상이 번역, 수입되면서 한국과 중국, 일본에서는 유기체론적 국가론에 근거한 근대 '국민' 개념이 수입된다. 물론 그렇게 수입된 이론은 원저의 내용이 아닌, 당시 동아시아 지식인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번역가 가토 히로유키가 이해한 기계적 유기체론이었다. 여기서 문제는 원래 이념형으로서 국가유기체론은 전체주의의 논리를 깔고 있는데, 그 변형인 기계론적 유기체론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국가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을 도구화할 위험성이 한층 더 높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거기서 파생된 국가와 국민, 민족 개념이 일본의 전체 관료사회에 파급되고, 조선총독부의 관료정치를 통해 일제시대는 물론, 오늘날 한국의 정치와 행정의 현실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은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하겠다.

한국사에서 일제시대까지 근대 '국민' 개념의 형성과정을 개념사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통적으로 '士'와 '민' 또는 군주와 소민으로 계층화되어 있

던 ‘국민’ 개념은 18세기 영조 이후 군민일체를 지향하는 ‘민국’ 개념이 등장하여 그 계층성이 점점 약화된다. 거기에 구한말 중국과 일본을 통해 서구 근대 ‘국민’ 개념이 수입되고, 국민성을 갖춘 ‘士’ 의식이 확산되면서, 전통적인 개념들과 일정 기간 경쟁을 벌이다가, 공식적으로는 일군만민체제의 ‘신민’으로 규정된다. 그러나 현실의 정치나 행정, 민간사회에서는 ‘국민’이나 ‘민중’, ‘관민’, ‘동포’, ‘일반(인)’, ‘인민’, ‘민(백성)’ 등 국민을 지칭하는 근대적인 용어와 전통적인 용어들이 혼재되어 사용되었다. 마지막으로 같은 ‘국민’이라는 기표 안에서도 통치의 목적에 따라 그 기의가 상당히 다른 용어들을 적절히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곧 일제 강점 초기에는 민족감정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대체로 중립적인 ‘인민’과 ‘국민’으로 부르다가, 3·1운동이라는 민중운동을 당하자 한국 민중을 달래고 관민의 일치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민중’과 ‘관민’을 강조하였다. 다시 전쟁의 확대로 고도 국방국가체제가 형성되자 소위 ‘천황폐하’ 아래 1억 국민의 절대복종을 끌어내기 위해 ‘국민’과 ‘관민’, ‘황국신민’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일제의 한국인 동화의 방향도 강점 초기의 “충량한 신민” 또는 “충량한 국민”에서, 일제 말기가 되면 “충량한 황민”으로 거듭난다.

일제시대를 통해 사용된 국민을 지칭하는 용어는 이 연구를 통해서 확인된 것만도 65가지나 될 정도로 기표가 너무 난립하여 통일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다만 국가 용어는 통치목적에 따라 일본제국 또는 한반도만을 의미하는 ‘이 땅’의 구분이 비교적 분명했으나, 국민 용어는 대체로 바로 눈앞에 있는 통치의 대상인 ‘조선 민중’이 중심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도 ‘국민’ 개념 안에는 군주와 나머지 국민, 내지인과 외지인의 구분과 같은 분명한 구획이 내재하고 있었다. 일제 말기에 한국인이 소위 혈세(징병)를 지불하면서 국민의 외연이 일거에 한 민족 전체로 확대되었다. 하지만 일본인에게 한국인은 여전히 황민이 되어야 할 존재였고, 한국인은 일본제국에 소속되기를 거부했기에 영원히 ‘비국민’으로 남아 있었다. 당시의 한국인에게는 오로지 한반도라는 ‘이 땅’ 안의 ‘조선인’ 내지 ‘한 민족’이 있을 뿐이었다. 광복과 함께 제국과 황국이 사라지면서, 그 통치대상인 ‘신민’이나 ‘제국신민’, ‘황국신민’이라는 개념도 곧장 사어화된다. 이처럼 정치체제의 급격한 변화는 개념의 변화를 초래한다.

요컨대 한국인은 일제시대를 통해 국가와 국민의 일체성을 전제로 하는 근대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없었고, 따라서 '덜 국민된 상태'로 광복을 맞이한다. 더욱이 식민통치 당국이 저지른 죽음의 정치를 목도한 한국인은 국가를 불신하고 거부하게 된다. 무엇보다 국민이라는 말과 국민의식의 분리는 광복 이후 한국인이 새로운 정치문화 형성의 주체인 '국민'으로 거듭나는데 커다란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일제의 유산 위에서 형성된 현재의 '국가'와 '국민'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방공간의 '국가'와 '국민' 개념 형성과 함께 국가형성(state building)과 국민형성(nation building) 과정에 대해 한층 더 집중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 참고문헌

- 강동국. 2005·3. “근대 한국의 국민·인종·민족 개념.” 《동양정치사상사》 5(1): 5~35.
- 강만길. 2001. 《고쳐쓴 한국현대사》. 서울: 창작과비평사.
- 고 원. 2009. “프랑스의 담론 분석과 개념사 연구.” 박근갑 외. 《개념사의 지평과 전망》, 139~159. 서울: 소화.
- 김동택. 2002. “근대 국민과 국가개념의 수용에 관한 연구.” 《대동문화연구》 41: 357~388.
- 김성보. 2009. “남북국가 수립기 인민과 국민 개념의 분화.” 《한국사연구》 144: 69~95.
- 김윤희. 2009·4. “근대 국가구성원으로서의 인민 개념 형성(1876~1894): 民=赤子와 《西遊見聞》의 인민.” 《역사문제연구》 21: 295~331.
- 김학이. 2009. “롤프 라이하르트의 개념사.” 박근갑 외. 《개념사의 지평과 전망》, 93~138. 서울: 소화.
- 김학준. 2003. 《한말의 서양정치학 수용 연구: 유길준·안국선·이승만을 중심으로》.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효전. 1991. “서구 헌법사상의 초기수용: 기본권사상을 중심으로.” 박병호교수환갑기념논총간행위원회(편). 《한국법사학논총》, 263~289. 서울: 박영사.
- _____. 2000. 《근대 한국의 국가사상: 국권회복과 민권수호》. 서울: 철학과현실사.
- 김효전 외(공역). 2003. 《국가학·국가학강령·국가사상학》. 서울: 관악사.
- 《대한매일신보》. 1908. “論說: 民族과 國民의 區別.” 7월 30일: 1.
- 《매일신보》. 1945. “詔書: 平和再建에 大詔渙發.” 8월 16일: 1.

- 박근갑. 2009. “‘말안장 시대’의 운동개념.” 박근갑 외. 《개념사의 지평과 전망》, 31~59. 서울: 소화.
- 박명규. 2009. 《국민·인민·시민: 개념사로 본 한국의 정치주체》. 서울: 소화.
- 박명림. 1996·여름호. “분단 시대 한국 민족주의의 이해: <열린> 민족주의의 모색.” 《세계의문학》 80: 48~75.
- 박양신. 2008·9. “근대 일본에서의 ‘국민’ ‘민족’ 개념의 형성과 전개: nation 개념의 수용사.” 《동양사학연구》 104: 235~265.
- 백동현. 2001·3. “러·일전쟁 전후 ‘民族’ 용어의 등장과 민족인식: 『皇城新聞』과 『大韓每日申報』를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10: 149~179.
- 신진욱. 2008. 《시민》. 서울: 책세상.
- 신충식. 2010·가을. “푸코의 계보학적 접근을 통한 통치성 연구.” 《정치사상연구》 16(2): 131~166.
- 안유림. 1994. “1930년대 총독 宇垣一成의 식민정책: 복선수탈정책을 중심으로.” 《이대사원》 27: 139~177.
- 염정삼(역해). 2010. 《說文解字注: 韻首字 譯解》.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유길준. 1895. 《西遊見聞》. 東京: 交詢社/ 채훈(역). 1975. 《한국명저대전집: 서유견문》. 서울: 대양서적.
- 임종국. 1994. 《실록 친일파》. 서울: 돌베개.
- 장인성. 2000. “‘인종’과 ‘민족’의 사이: 동아시아연대론의 지역적 정체성과 ‘인종.’” 《국제정치논총》 40(4): 111~138.
- 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편). 2002. 《21세기 정치학대사전(상)》. 아카데미아리서치.
- 정태현. 2002. “‘민주적 민족적 국민’ 형성의 장정에서 본 ‘박정희 시대.’” 《역사문제연구》 9: 11~40.
- 차기백(편). 1985. 《일제의 한국식민통치》. 서울: 정음사.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007. 《2007년도 조사보고서 II-3: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이유서》. 서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 _____. 2009a.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보고서 IV-11: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서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 _____. 2009b.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보고서 IV-14: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서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 한국학문헌연구소(편). 1990. 《朝鮮總督府官報(1~142권)》(영인본) 각 해당호; 《朝鮮

- 總督府官報總索引》(제1권). 서울: 아세아문화사.
- 한상일. 1988. 《일본의 국가주의: 昭和維新과 국가개조운동》. 서울: 까치.
- 한승연. 2010·12. “일제시대 근대 ‘국가’ 개념 형성과정 연구.” 《한국행정학보》 44(4): 1~27.
- 《황성신문》. 1900. “寄書: 西勢東漸의 起因.” 1월 12일: 2.
- 加藤弘之(講述). 1870. 《眞政大意》. 東京: 山城屋佐兵衛.
- _____. 1874. 《國體新論》. 東京: 谷山樓 藏梓.
- 堀幸雄. 1991. “美濃部達吉博士暗殺豫備事件”, “美濃部達吉博士狙擊事件.” 《右翼辭典》, 566. 東京: 三嶺書房.
- 龜井孝. 1974·8. “天皇制の言語的考察.” 《中央公論》 89(8): 153~165.
- 今井清一·高橋正衛(共編). 1963. “所謂《天皇機關說》を契機とする國體明徴運動.” 《現代史資料(4): 國家主義運動(1)》, 345~454. 東京: みすず書房.
- 紀平正美. 1919. “國家の概念.” 《東亞之光》 14(2): 28~33.
- 吉原功. 1994. “大衆.” 大學教育社(編). 《現代政治學事典》, 622. 東京: 櫻楓社.
- 大學教育社(編). 1994. 《現代政治學事典》. 東京: 櫻楓社.
- 蠟山政道. 1949. 《日本における近代政治學の發達》. 東京: 實業之日本社.
- 明治文化研究會(編). 1971. 《明治文化全集 補卷(2): 國法汎論》. 東京: 日本評論社.
- 木村幹. 1996·9. “‘臣民からネーションへ’: 韓國におけるネーション意識形成への一考察.” 《愛媛法學會雜誌》 23(2): 103~137.
- 木村毅. 1971. 《國法汎論》解題. 明治文化研究會(編). 《明治文化全集 補卷(2): 國法汎論》, 3~23. 東京: 日本評論社.
- 美濃部達吉. 1912. 《憲法講話 全》. 東京: 有斐閣書房.
- 柄谷行人. 2002. 《日本精神分析》. 東京: 文藝春秋/ 송태욱(역). 2008. 《일본정신의 기원 (개정판)》. 서울: 이매진.
- 福澤有吉. 1872/2009. 《西洋事情》. 東京: 慶應義塾大學出版會株式會社.
- _____. 1875/2010. 《文明論之概略》. 東京: 岩波書店.
- _____. 1880/2009. 《學問のすすめ》. 東京: 慶應義塾大學出版會株式會社.
- 飛鳥井雅道. 1984. “《國民》の創出-國民文化の形成・序說.” 飛鳥井雅道(編). 《國民文化の形成》, 3~66. 東京: 筑摩書房.
- 山口吸一(編). 1939. 《(改訂)朝鮮制裁法規 全》. 京城: 朝鮮圖書出版株式會社.
- 山田央子. 1991·12. “ブルンチュリと近代日本政治思想(上): 《國民》觀念の成立とその

- 收容.”《東京都立大學法學會雜誌》32(2): 125~174.
- _____. 1992・7. “ブルンチュリと近代日本政治思想(下): 《國民》觀念の成立とその收容.”《東京都立大學法學會雜誌》33(1): 221~293.
- Saleh, Adel Amin. 2008. “エジプトと日本における政治語彙の造語--ネーション概念の言語的な考察とその対応語.”《横浜国立大学留学生センター教育研究論集》15: 33~74.
- 三谷博. 2001. “《我ら》と《他者》: ステイティズム・ナショナリズム形成素・ナショナリズム.” 朴忠錫・渡辺浩(共編). 《國家理念と對外認識: 17-19世紀》, 217~254. 東京: 慶應義塾大學出版會株式會社.
- 西角純志. 2004. “人民.” 石塚正英・紫田隆行(監修). 《哲學・思想翻譯語事典》, 169. 東京: 論創社.
- 水田直昌(監修). 1974. 《總督府時代の財政: 朝鮮近代財政の確立》, 83~113. 東京: (財)友邦協會.
- 新潮社辭典編集部(編). 1991. 《新潮日本人名辭典》. 東京: 新潮社.
- 安世舟. 1976. “明治初期におけるドイツ國家思想の收容に関する一考察: ブルンチュリと加藤弘之を中心として.” 日本政治學會(編). 《日本における西歐政治思想》, 113~156. 東京: 岩波書店.
- 安田浩. 1992. “近代日本における‘民族’觀念の形成-國民・臣民・民族.”《思想と現代》31: 61~72.
- 歴史學研究會(編). 1997. “美濃部達吉の天皇機關說 1912年.”《日本史史料: 近代》, 293~295. 東京: 岩波書店.
- 月脚達彦. 1995. “甲午改革の近代國家構想.”《朝鮮史研究會論文集》33: 67~92.
- _____. 1999. “獨立協會の《國民》創出運動.”《朝鮮學報》172: 1~41.
- 李太鎮. 2001. “朝鮮時代の《民本》意識の變容と18世紀《民國》理念の台頭.” 朴忠錫・渡辺浩(共編). 《國家理念と對外認識: 17-19世紀》, 3~41. 東京: 慶應義塾大學出版會株式會社.
- 佐藤成基. 1999. “《國家》と《民族》: ドイツと日本におけるネーション概念の形成と變容をめぐる比較歴史社會學的分析.”《茨城大學人文學部紀要: 社會科學論集》32: 39~67.
- 佐竹寛. 1994. “國民.” 大學教育社(編). 《現代政治學事典》, 326. 東京: 櫻楓社.
- 趙景達. 1998. 《異端の民衆反乱: 東学と甲午農民戦争》. 東京: 岩波書店/ 박명수(역). 2008.

- 《이단의 민중반란: 동학과 갑오농민전쟁 그리고 조선 민중의 내셔널리즘》. 서울: 역사비평사.
- _____. 2002. 《朝鮮民衆運動の展開: 士の論理と救済思想》. 東京: 岩波書店/ 허영란 (역). 2009. 《민중과 유토피아: 한국근대민중운동사》. 서울: 역사비평사.
- 朝鮮總督府(編). 1916. 《朝鮮法令輯覽》. 東京: 巖松堂書店.
- _____. 1922. 《施政に関する諭告・訓示並演述》. 京城: 朝鮮印刷.
- _____. 1935. 《施政25年史》. 京城: 朝鮮印刷株式會社.
- _____. 1937. 《朝鮮施政に関する諭告・訓示並に演述集》. 京城: 朝鮮總督府.
- _____. 1940. 《施政30年史》. 京城: 朝鮮總督府.
- _____. 1943. 《朝鮮總督府 施政年報》(1940년도판). 京城: 朝鮮印刷株式會社. 국학자료원(영인), 1996.
- 千葉了. 1925. 《朝鮮獨立運動秘話》. 東京: 帝國地方行政學會/ 이충호·홍금자(공역). 1993. 《조선통치비화》. 서울: 형설출판사.
- 漢許愼/ 금하연·오채금(공편). 2010. 《(段玉裁注) 說文解字 聲符辭典》. 서울: 일원산방.
- 樺島博志. 2005. “國民概念に関する覺書.” 《法學》 69(6): 890~918.
- 丸山眞男. 1952. 《日本政治思想史研究》.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김석근(역). 1995. 《일본정치사상사연구》. 서울: 통나무.
- Anderson, Benedict. 1991.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London: Verso/ 윤형숙(역). 2002. 《상상의 공동체: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찰》. 경기 과주: 나남.
- Bluntschli, Johann Kaspar. 1868. *Allgemeines Staatsrecht, 4th. (ed.)*/ München: J. G. Cotta'schen Buchhandlung/ 加藤弘之(譯). 1879. 《國法汎論(제1권-4권)》. 東京: 文部省 藏版.
- _____. 1874. *Deutsche Statslehre für Gebildete*. Aördlingen: C. H. Beck'schen Buchhandlung/ 平田東助·平塚定二郎(共譯). 1889. 《國家論》. 東京: 春陽堂/ 吾妻兵治(譯). 1899. 《國家學》. 東京: 善隣譯書館, 서울: 관악사. 2004(영인).
- Bluntschli, Johann Caspar. 1875/1886. *Lehre vom modernen Stat vol. 1, Allgemeines Statslehre*, Nabu Press. 2010(rep.)/ P. E. Matheson. 1885. “The Fundamental Conditions of the State in the Nature of Men and of Nations.” In D. G. Ritchie, P. E. Matheson & R. Lodge. (trans.). *The Theory of the State*, 75~207. Oxford: The Clarendon Press.
- _____. 1875/1886. *Lehre vom modernen Stat vol. 1, Allgemeines Statslehre*, Nabu Press.

- 2010(rep.)/ D. G. Ritchie. 1885. "The Concept of the State/ The Rise and Fall of the State." In D. G. Ritchie, P. E. Matheson & R. Lodge. (trans.). *The Theory of the State*, 13~81, 241~283. Oxford: The Clarendon Press.
- Foucault, Michel. 1982. "The Political Technology of Individuals." In R. Hurley and Others. (trans). 2000. *Power*, 403~417. New York: The New Press.
- _____. 2009. *Security, Territory, Population: Lectures at the College de France 1977-78*. Graham Burchell. (tran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Greenfeld, Liah. 1992. *Nationalism: Five Roads to Modernity*.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Hölshcer, Lucian. 2009. "The Concept of Conceptual History(*Begriffsgechichte*) and the 'Geschichtliche Grundbegriffe'"/ 김성호(역). 2009. "개념사의 개념과 <<역사적 기본개념>>." 박근갑 외. <<개념사의 지평과 전망>>, 11~30. 서울: 소화.
- Hroch, Miroslav. 1996. "From National Movement to the Fully-Formed Nation: The Nation-Building Process in Europe." In Eley, Geoff and Ronald Grigor Suny. (eds.). *Becoming National: A Reader*, 60~77.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Kimura, Mitsuhiro. 1995. "The economics of Japanese imperialism in Korea, 1910-1939." *Economic History Review* 48(3): 555~574.
- Koselleck, Reinhart. 1995. *Vergangene Zukunft - Zur Semantik geschichtlicher Zeiten*, 3d(ed.). Frankfurt am Main/ 한철(역). 2007. <<지나간 미래>>. 경기 파주: 문학동네.
- Koselleck, Reinhart, Fritz Gschnitzer, Karl Ferdinand Werner & Berund Schönemann. 1992. "Volk, Nation, Nationalismus, Masse." In Otto Brunner, Werner Conze, & Reinhart Koselleck. (eds). *Geschichtliche Grundbegriffe: Historisches Lexikon zur politisch-sozialen Sprache in Deutschland, Vol. 7.*, 141~431. Stuttgart: Klett-Cotta.
- Momigliano, Arnaldo. 2005. "The Rise of the plebs in the Archaic Age of Rome." In Raaflaub, Kurt A. (ed.). *Social Struggles in Archaic Rome: New Perspectives on the Conflict of the Orders*, 168~184. Melden, MA: Blackwell Publishing.
- Richter, Melvin. 1995. *The History of Political and Social Concepts: A Critical Introduction*. New York,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chmidt, Manfred G. 2010. *Wörterbuch zur Politik, 3d. (ed.)*. Stuttgart: Kröner.
- 국립중앙도서관 원문정보DB 관보(1894-1945)/ 신문(~1945) (www.dlibrary.go.kr/JavaClient/jsp/wonmun/index.jsp).

동방미디어 > 동양고전 > 《孟子》, 《書經》(www.dbmedia.co.kr).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 *Deutsche Statslehre für Gebildete* (<http://lib.snu.ac.kr/search/DetailView.ax?sid=1&cid=606478>)

일본 국회도서관 > 近代デジタルライブラリー > 《國家論》, 《國體新論》, 《眞政大意》, 《憲法講話》(kindai.ndl.go.jp).

HathiTrust Digital Library > *Allgemeines Staatsrecht*(1868)(www.hathitrust.org).